



[2] 1991년 7월 20일(토요일) 한겨레 (5판)

## 사설

### '대필 유서'의 일본 감정과 공권력의 위엄

유서의 대필 여부를 둘러싼 두 달여의 긴 공방에 마침내 법정 심리를 눈앞에 듣 시점에서 검찰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이웃 일본의 저명한 감정인의 필적 소전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더욱이 그 감정질과가 한국기독교교 회협의회가 아니라 일본의 기독교교협회와 함께 일본 감정인협회에 의해 얻어낸 것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적어도 '자살방조'라는 형사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기독교인들이 세계적 종교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에서 이 사건에 관한 한 어떤 이해관계도 있을 리 없는 3국인 전문가의 판단을 구웠다는 점에서, 진실에 접근하는 경계의 종교적 충돌, 동시에 순수함과 결론의 객관성은 훌륭한 만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수사의 무리함을 거듭 지적해온 우리는 당국의 이와 같은 태도가 결국 국립과학 수사연구소를 포함한 국가 수사기관과 경찰과 함께 원래 있는 일정과는 다른 시기로 재판에 들어온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민족학자인 김소장으로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니니 검찰 내부의 우려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 개인을 정치적 제물로 삼는 행태의 범죄"라는 재벌의 비난성명에서 드러나듯 유서 대필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의 의혹은 조금도 가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계 판파장을 차지하고 있는 '변호인학'이 버르고 있다는 새로운 즐거움도 제사를 치는 경우 검찰은 더욱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라도 진실로 '공권력의 위엄'을 짚기는 갑이 무엇인지 정부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야 할 매우 어려운 시점이라는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철철하다 하겠다.

### 강기훈씨 보석 신청

검찰서 분신사건으로 재판장 조 험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전민원 총무부장 강기훈(27)씨는 20일 유현석 변호사 등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형사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강씨는 신청서에서 "검찰이 재판을 위한 활동을 악화시킬 위험으로 구체적·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한 새 나를 구속기소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유린한 행위"라며 "공소장이 범행내용조사 확정돼 있지 않아 공소기각해야 마련하지만 소송의 합리적 진행을 위해 우선 보석상태에 재판에 중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7/26 한겨레

### 대규모 검찰 인사 특징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사 인사는 전체 8백여명 가운데 3백50명이 이동했다는 점에서 전 세부는 앞으로 지청장의 실세화를 수도권으로 확대할 방침

반대해 거리에 출마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가장 큰 특징은 서울지검의 4개 지청장들이 모두 검찰의 '별'적인 검사장으로 고위 검사들의 '고명화' 현상을 이어가겠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숙원이다. 이는 검사장들의 면면을 통해 풀어놓을 수 있다. 이번에 그동안 서울시내 지청장을은 검사장 자리에 오른 5명은 연령

갖고 40대 초반에 검사장이 되거나 서기로 진급해온 것으로, 지청장으로 60살이 넘을 때 검찰총장이 되는 시대에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인사에서 검사장의 아래 직급인 고등검찰관이 자지하는 요직인 서울지검 차장

과 수석부장 자리의 TK 출신

이 거울 독식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태 이전에도 부부장검사로 서원 1위인 행사 1부장에 김

우주자였던 강신욱 고등검찰관이 일명 TK끼리 자리바꿈 했다.

### 서울 4개 지청장 검사장 승진...실세로

### '유서대필' 담당 요직 등용 눈길

대부분 검사장

승진이 회복한 고참 고등검찰관에 대한 경우 유우

차원에서 인정되거나 일부에서는 회복한 경우 유우

## 91. 7. 30. 경계화 ‘보안관찰법’ 폐지 위한 도구되어

전민련 서준식씨 옥중편지

꽃다운 한 젊은이가 백골단의 죄파이프에 맞아 죽은 뒤 우리와 5월의 거리는 이에 분노하는 수많은 군중의 함성으로 매워졌다. 이 무렵 나의 사랑하는 후배 김기설씨는 폭력정권 타도를 위하여 모두가 하나되어야 한다고 절규하면서 스스로 몸을 사르고 산하에 갔다.

이때부터 정권쪽에서 근거로 일이 유보하기 시작한 분신사살 배후실 내지 유서대필설은 분명히 김기설씨의 죽음을 모독하면서 재이 운동권의 도덕성에 훔침을 내고 노정권 타도의 활성으로 드리게 토집감은 것이었다.

나는 이와 같은 구속은 순전히 검찰의 제7대로의 전회에 따른 것이다. 무당하다고 주장한다. 말마다 국가 최고 권력집행기관임을 내세우는 검찰이 이런 비열한 수법을 가지고서 최고 권력집행기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확각이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일 뿐

임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동구치소 수감증〉

## 91. 7. 31. 경계화 유서대필 공방에서 보안관찰법까지

유신체제가 만들어낸 윤간 악법 가운데서도 가장 천근대적 인권침해법으로 악명높은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것은 89년 초여름이다. 당시 법조·언론 등 각계의 빛발치는 완전폐지 요구에 도 불구하고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는 데 그지 긴 했지만 그나마의 반민주악법 개폐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열망을 불러일으킨 결정적 계기가 한 수인의 처절한 옥중투쟁이었음을 기억해도 좋다.

서준식씨, 재일동포로 서울대 법대 4학년에 재학중 ‘국유유학생간첩단’ 사건에 관련해 7년의 형기를 다 살았고 무려 차례나 거듭되는 그의 반인간적 범죄를 통해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법의 신고와 무불이행을 저지른다. 그들은 그를 기소하면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은 유서대필 문제와 관련해 진실규명에 앞장서온 대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 전민련의 전학성명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3년전부터 사설상 목인들은 보안관찰법상의 신고와 무불이행을 저지른다. 그들은 그를 기소하면서 그 것을 뒷받침해준다.

87년 6월 청주 보안감호소에서 51일간의 처벌

한 단식투쟁을 통해 ‘사회안전법’이라는 거대한 범죄를 풀어 맞았던 서준식씨는 “이제 다시 죄

개, 그가 써워 가까스로 바꿔놓은 그 보안관찰법의 용기미가 써워져 구속기소됐다는 기막힌

보도가 엉그제 있다. 그것도 보안관찰법이 실

시원 아래 처음으로...

그가 자유의 품이 된 지 3년 만에 다시 영어의 물이 된 것은 지난달 말 ‘법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과 명동성당 성당을 끌고 자진출두하면서였다.

전민련 인권위원회장으로서 그는 유서대필 혐의자로 물린 강기설씨를 도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던 터였다. 그

의 구속사유가 징시법 위반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가 주장하듯 그는 강경대처 타살정책의 소용

나를 구속하는 명분으로 동원한 것은 결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부터 고통에 친 단식투쟁을 벌이었다. 그러나 수십만 군중 속에서 그들과 함께 분노하면서 “백살 단 해체” “노태우 정권 폐진”을 외치고 민주정부 수립을 주장했다는 것 외에 나에게서 그 어떤 결회 주도 혐의도 찾아내지 못 하자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발을 묶기 위하여 그 다음으로 동원한 것이 보안관찰법으로 전대미문의 악법이었던 사회안전법을 벗겨내는 도구가 되었는데, 그는 3년 전부터 사실상 계속 확인하여 나의 보안관찰법상의 신고와 불이행을 새롭게 풀어놓은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구속은 순전히 검찰의 제7대로의 전회에 따른 것이다. 무당하다고 주장한다. 말마다 국가 최고 권력집행기관임을 내세우는 검찰이 이런

비열한 수법을 가지고서 최고 권력집행기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확각이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일 뿐

임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나는 이런 부당한 구속에 항의하기 위하여 지난 10일부터 고통에 친 단식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도주할 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나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기작되었고 결국 기소가 진행되었다. 그것은 광안동치의 커다란 그늘 아래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상상되는 결과였다.

그러나 과거 17년 동안 피눈물 속에서 구금생활을 겪으면서 전대미문의 악법이었던 사회안전법을 벗겨내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나는 다시 좌왕 속에 갇힐면서 사회안전법의 축소판인 보안관찰법과 정면 대결해 그것을 벗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권운동가로서 하나의 큰 영광이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정치인들이 무겁게 짓눌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안관찰법은 기필로 벗겨되어야 하며 나는 이제부터 이를 위한 법정부정 준비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검찰의 나에 대한 기소 이유는 이처럼 내가 검찰의 조작으로에 맞서 싸워 왔다는 데 있다. 나의 입을 물어막기 위하여, 나의 말을 묶기 위하여 검찰이 우선

앞에서 놀라나온 김양 등에게 “도산서원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며 승용차에 태운 뒤 이곳에서 1백km 떨어진 대구시내까지 강제로 납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서-강씨필적 전화달라’

일본 패력감정가 재확인

【도쿄=연합】 분신한 남기철씨의 유서와 강기설씨의 필적을 감정했던 일본인 오니시 요시오는 22일 오후 도쿄도에 있는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JNC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의 유서는 강씨 필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고 “한국 법정에서 요청이

있으면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패력감정 배경에 대해 “나는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교회협의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평소 안면이 있는 변호사 나카에이(전 JNCC 상임위원)가 부탁을 해와 감정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유서대필’ 공방 법정서 배수진

2/8  
27) 강기설씨 첫 공판 관심쏠려

의 세시와 검찰에 의해 수배된 관련자의 법정 증언 등으로 검찰 기소의 허구성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버텼고 있다.

변호인단은 첫 공판에서 강씨에 대한 기소를 ‘자학해 줄 것은 멀원에 요청한다는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즉,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범행 방법도 보다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등 유서대필의 ‘범죄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강씨를 자살방조죄로 기소한 것은 분명한 공판 ‘결의 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강씨를 헤노맹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한 것도 무죄선고 때 강씨가 석방되

검찰은 강씨 기소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서도 이렇다하게 전전된 증거를 얻지 못했으며 변호인단이 ‘공소결과사유로 꼽고 있는’ ‘법률적 예정으로 있어 법정에서의 일대 격전이 예상돼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2일 검찰에 의해 기소된 45일만에 열리는 이번 공판을 앞두고 그동안 공연력의 위신을 걸고 공소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검찰과 재야의 도덕성을 걸고 무죄증명을 위해 노력해온 변호인단은 서로간에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배수진을 맡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기소파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서와 강씨의 필적이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와 △분신사건을 전후해 강씨의 행적이 미실적이라는 점 △승진 김씨의 여자친구 유키(26)씨 등 참고인 7명의 진술 등을 유죄의 정황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19일간의 강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자살방조죄를 증명할 ‘진술이나 결정적 증거를 확보 못한 검찰은 내심 초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8명의 변호인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보이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에서 유

는 것을 막는 전략이지만 그 이전에는 검찰이 강씨의 자살방조부분의 유죄증명에 자신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과 6월 시위·정국의 핵심이었던 유서대필·자살·공방은 이제 법정에서 증거와 증인을 내세우며 다시 한번 불붙겠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데서 재판 결과를 미난 최후의 승자라는 점에는 큰 이전이 없을 것이다. 〈이길우 기자〉





(4판) 1991년 9월

## “대필시인 검찰협박 시달려”

강기훈씨 2차공판 ‘임무영씨 혐의’ 진술 번복

친민연 사회부장 김기성씨는 문  
신사진과 관계에 서장방조 등 혐  
의로 구속기소된 친민연 솔무부  
장 강기훈(27)씨에 대한 2차 공  
판이 11일 서울형사재판부 205  
부(재판장 노현우 부부장판사) 실  
리로 열리며 민관대민분분을 바  
쳤다.

강씨는 신사진에게 “검찰조사 당  
시 자작권과 저작권을 주장하는  
유서를 대량으로 내밀었다”고 말  
하면서 “저작자에게 충격을 주었  
는데 그 결과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김기성은 나의 칭예  
시인은 유서가 대량으로 쓰였을 때  
는 대체로 일상적인 행위로 단정  
시한 친민연 사회부장은 일부에  
는 서지기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변호인 맞은 마찰**

○-○-날 재판에서 김기성과 변  
호인단은 전문가로 출마, 신변에  
관심을 둔 갑작스런 충돌을 벌여  
온다.

친민연은 김기성이 전문가로 출  
마한 이유를 밝혔다.

친민연은 “검찰조사 당시 서  
울경찰서는 강기성의 유서  
내용에 대해 드물게 삼엄한 경비  
를 펼쳐 이 사건의 비중을 높였다”  
라고 전했다.

이날 경비장들은 “반기훈에게  
의 수피 험프로 재판증인 학교  
해비의 재판 배제로도 더 심각한  
모습을 보였으며 한 여성학생과  
의 경우 손가방 속에는 대량의  
유전증거나 진정증거는 대사  
증거로 지목되는 물질로 된 필적  
만으로 수사에 혼선을 보였다”  
라고 전했다.

이번 경비장들은 “반기훈에게  
의 수피 험프로 재판증인 학교  
해비의 재판 배제로도 더 심각한  
모습을 보였으며 한 여성학생과  
의 경우 손가방 속에는 대량의  
유전증거나 진정증거는 대사  
증거로 지목되는 물질로 된 필적  
만으로 수사에 혼선을 보였다”  
라고 전했다.

[1991.8.29. 경기일보]

온 시기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변호인 맞은 마찰

○-○-날 재판에서 김기성과 변  
호인단은 전문가로 출마, 신변에  
관심을 둔 갑작스런 충돌을 벌여  
온다.

친민연은 김기성이 전문가로 출  
마한 이유를 밝혔다.

친민연은 “검찰조사 당시 서  
울경찰서는 강기성의 유서  
내용에 대해 드물게 삼엄한 경비  
를 펼쳐 이 사건의 비중을 높였다”  
라고 전했다.

이날 경비장들은 “반기훈에게  
의 수피 험프로 재판증인 학교  
해비의 재판 배제로도 더 심각한  
모습을 보였으며 한 여성학생과  
의 경우 손가방 속에는 대량의  
유전증거나 진정증거는 대사  
증거로 지목되는 물질로 된 필적  
만으로 수사에 혼선을 보였다”  
라고 전했다.

이번 경비장들은 “반기훈에게  
의 수피 험프로 재판증인 학교  
해비의 재판 배제로도 더 심각한  
모습을 보였으며 한 여성학생과  
의 경우 손가방 속에는 대량의  
유전증거나 진정증거는 대사  
증거로 지목되는 물질로 된 필적  
만으로 수사에 혼선을 보였다”  
라고 전했다.

친민연은 “반기훈에게  
의 수피 험프로 재판증인 학교  
해비의 재판 배제로도 더 심각한  
모습을 보였으며 한 여성학생과  
의 경우 손가방 속에는 대량의  
유전증거나 진정증거는 대사  
증거로 지목되는 물질로 된 필적  
만으로 수사에 혼선을 보였다”  
라고 전했다.

[1991.8.29. 경기일보]

친민연은 “반기훈에게  
의 수피 험프로 재판증인 학교  
해비의 재판 배제로도 더 심각한  
모습을 보였으며 한 여성학생과  
의 경우 손가방 속에는 대량의  
유전증거나 진정증거는 대사  
증거로 지목되는 물질로 된 필적  
만으로 수사에 혼선을 보였다”  
라고 전했다.

친민연은 “반기훈에게  
의 수피 험프로 재판증인 학교  
해비의 재판 배제로도 더 심각한  
모습을 보였으며 한 여성학생과  
의 경우 손가방 속에는 대량의  
유전증거나 진정증거는 대사  
증거로 지목되는 물질로 된 필적  
만으로 수사에 혼선을 보였다”  
라고 전했다.

친민연은 “반기훈에게  
의 수피 험프로 재판증인 학교  
해비의 재판 배제로도 더 심각한  
모습을 보였으며 한 여성학생과  
의 경우 손가방 속에는 대량의  
유전증거나 진정증거는 대사  
증거로 지목되는 물질로 된 필적  
만으로 수사에 혼선을 보였다”  
라고 전했다.

[1991.8.29. 경기일보]

[1991.8.29. 경기일보]

○-○-날 경찰에서는 강기성이  
제작한 유서를 증거로 제출해  
온 후에는 이를 확보해 조사하는  
방법으로 분석되는 듯한  
장면이 예상되는 경우

[1991.8.29. 경기일보]

○-○-날 경찰에서는 강기성이  
제작한 유서를 증거로 제출해  
온 후에는 이를 확보해 조사하는  
방법으로 분석되는 들판

[1991.8.29. 경기일보]

○-○-날 경찰에서는 강기성이  
제작한 유서를 증거로 제출해  
온 후에는 이를 확보해 조사하는  
방법으로 분석되는 들판

○-○-날 경찰에서는 강기성이  
제작한 유서를 증거로 제출해  
온 후에는 이를 확보해 조사하는  
방법으로 분석되는 들판

[1991.8.29. 경기일보]

[1991.8



(1964 6. 9 233回(1964年6月9日) 第862號)  
 1972 12·29 270回(1972年12月29日) 第270號)

**모두가 함께한 진실의 싸움**

권태평씨  
 강기훈씨 어머니 특별기고  
 10.1

『강기훈 피고인! 피고인은 공산주의 대신조를 아닙니까?』『모릅니다』『공산주의 대신조에 보면 투쟁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죽일 수 있다는 조목이 있는데 알지요?』『모릅니다』『피고인은 그런 사실을 가지고 강기설의 자살을 도와준게 아닙니까?』『아닙니다』『그래서 유서를 대신 써준게 아닙니까?』『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8월 28일 기훈이의 일차공판때 창장 네시간에 걸친 검사 신문의 끝머리 부분이다.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공판은 오후 4시가 될 때까지 기훈이의 모든 진술시간 20여분과 점심시간 1시간여의 모든 시간을 검사의 신문으로 메우고 있었다. 끝나고 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말만 바꾸어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퍼부어대고 있었다. 유서대필 관계 75문항. 혁노맹 관계가 1백문장으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신문이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나는 목청껏 소리치고 싶었다. 그만 좀 해두라고. 가슴은 젖어 지는 듯 했고 등골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참고 참던 나는 집에 와서 결국 눕고 말았지만 공판장에서의 모든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간의 일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한번의 가족연회도 허락되지 않았던 19일동안의 유서대필 조사기간, 그후 15일간의 혁노맹 추가 조사기간이 어떤가 하는 것을… 공개석상에서도 저렇게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면서 친구에게 유도신문을 하는데 필실에서는 어떤가? 검사가 8~9명 그림에 수사관이 수십명 이를 밟을 세운것이 두번, 하루밤의 새운것이 세번… 아~ 생각만 해도 몸서리 치진다 왜? 금쪽같은 내자식이 여리고 청하고 흐지민 내자식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가혹한 곤욕을 치꿔야 보듯이 하는 사람을 대할지면 나는

그만 세상을 하직하고 싶을 때가 있다. 얼굴 생각처럼 착하고 유순하기 만한 내자식이 친구의 물연한 사고사에 몇달을 두고 슬피 울던 내자식이 남의 죽음을 방조한 죄인으로 물리다니…

참을수 없는 고통과 비애도 기다리면 지나가고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던가? 이제 공판이 시작 되었고 10월 9일이면 4차 공판이다. 때론 겉사보다 한술 더드고 물고 늘어지는 판사들의 양심을 어디까지 밀어야 할지 미지수이지만 기다려 보는 수밖에… 어쨌든 나는 강경대 탈 이후의 물풀은 정국의 반전을 위해 내아들을 희생 양으로 만든 모든 사람과 내아들의 등을 밟고 출세를 꿈꾼 모든 세력을 끝까지 지켜 볼것이다. 부름든 눈으로…

그래도 이땅엔 진실을 믿어주고 그것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도와주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기에 진실은 어느샌가 가려진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기에 회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특히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싶은 많은 분들이 있다. 처음부터 진상을 가리기 위해 여러모로 수고 하셨고 JNCC까지 필적감정을 외회해 필정감정의 권위자 오니시씨의 상세한 감정 결과를 얻어내 일반인들의 시각을 많이 끌어놓게 해주신 JNCC여러 목사님들과 실무자들 그리고 명동성당에서 보호해주신 신부님들, 재야의 여러분들 또 기훈이의 선후배들, 친구들,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주신 우리교회 여러 어른들, 여러분으로 수고해주신 실무자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자식을 돌아오지 못할곳으로 보내신 여러 부모님께 진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언젠가 이렇게 생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때 억울하게 눈을 감은 우리의 자식들도 지하에서나마 활짝 웃게 될 것이라고…'

9일 열린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4차공판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강씨의 자살 방조 혐의를 및 받침해주는 거의 유일한 검찰쪽 증거를 제공해준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김정책임자인 김형영(52) 문서분석실장이 증인으로 나온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공판을 지켜본 변호인과 방청객들은 김씨 증인이 예상밖으로 궁색하고 허술한 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가공공기관의 감정전문가의 일에서는 나름대체를 어떻게 알아내고 이를 감정했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질증추궁했다.

변호인들은 "업무일자는 실제로 세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는데도 이런 사실조사 모른 채 감정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씨는 업무일자 중 유서와 같은 글씨체가 있는지를 찾는

9/10/11 화제의 투시경  
 자신없는 '유서감정 증언'

9월 11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4차공판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강씨의 자살 방조 혐의를 및 받침해주는 거의 유일한 김형영(52) 문서분석실장이 증인으로 나온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공판을 지켜본 변호인과 방청객들은 김씨 증인이 예상밖으로 궁색하고 허술한 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가공공기관의 감정전문가의 일에서는 나름대체를 어떻게 알아내고 이를 감정했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질증추궁했다.

변호인들은 "업무일자는 실제로 세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는데도 이런 사실조사 모른 채 감정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씨는 업무일자 중 유서와 같은 글씨체가 있는지를 찾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답변에 그쳤다.

더욱이 김씨는 감정에서 두 가지 필적을 비교할 때 동일 특정 비율이 70% 이상이면 같다고 판정한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나온 감정비율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또한 변호인들이 국과수쪽에 김씨 유서와 강씨 자술서를 감정한 결과 동일하다고 판정했으나 '9' 부분이 분명히 다르지 않느냐고 캐묻자 우물쭈물하다가 "다르다"고 시인까지 했다. 이때 재판장이 "처음부터 감정을 제대로 했으면 변호인단에게 이러한 지적을 받았겠느냐"며 질책까지 하자 법정은 술렁이기도 했다.

〈이재열 기자〉

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이 국회에 낸 국정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바다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7백98명으로 하루 평균 2.2명에 이르고 있으며 올 들어 8월 말까지는 5백82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9. 26. 木

**강기훈씨 3차 공판**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3차 공판이 2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씨의 외사촌 이재구(21·군인)씨는 신문에서 "지난 5월 검찰조사에서 평소 김씨의 필적을 자주 본 테다 필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서원본이 김씨의 필적과 다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면서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김씨 필적은 5

~6년 전에 본 것이 대부분이어서 확실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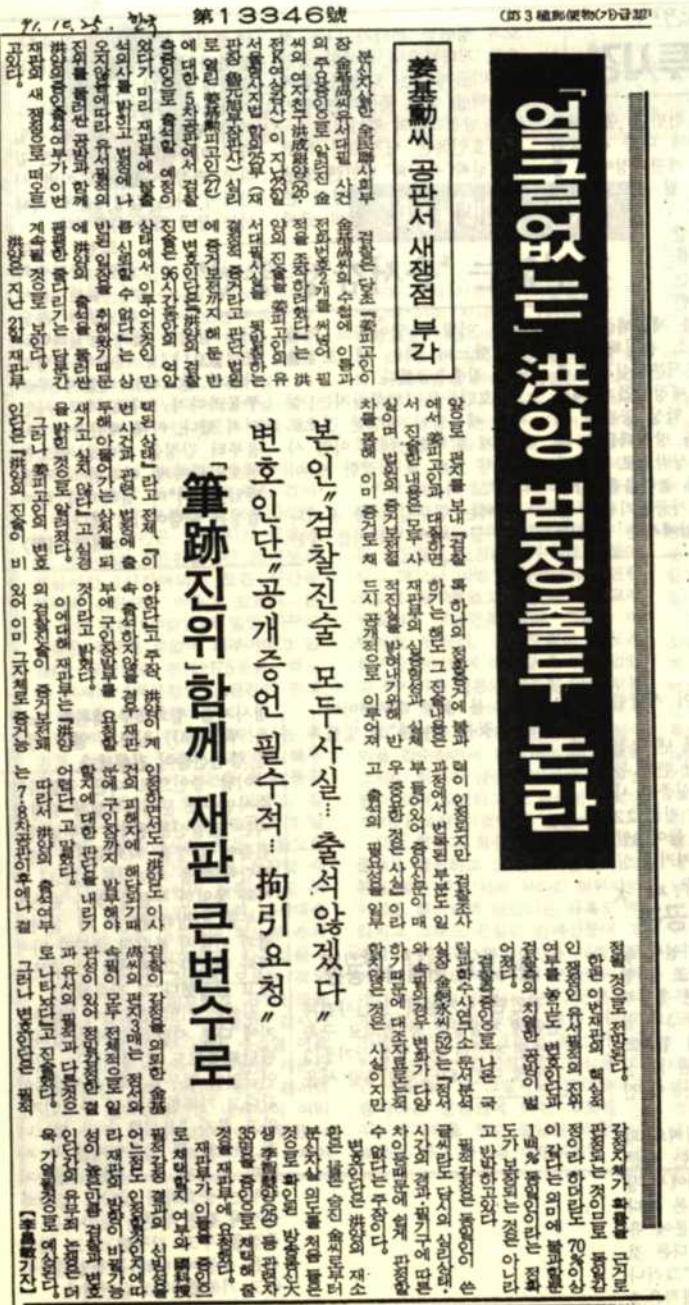
**강기훈씨 어제 4차공판**

전민련 김기설씨 분신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4차공판이 9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는 검찰신문에서 "업무일자는 감정을 의뢰하면서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도 있으니 유서와 동일한 부분을 찾아 같은지 여부를 감정해라고 해 살펴본 결과 이를치. 분량의 글씨가 나에게 다르다고 판단돼 이 부분을 빼고 감정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어 변호인이 "업무일자에 다른 사람의 글씨가 있다고 판단해놓고도 감정서에는 전혀 언급없이 업무일자와 유서필적이 같다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자 "유서를 누가 썼느냐가 중요할 뿐 업무일자를 두 사람이 썼는지 세 사람이 썼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유서와 같은 부분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감정했고 그 결과 같은 부분이 나타나 동일필적이라고 기록했다"고 답변했다.



## 홍성은씨 법정출두 논란

강기훈씨 재판 홍씨 "검찰진술 사실...불출석 고수"

강씨 변호인 "증인신문 꼭 필요...구인 요청"

본신자살한 전민관 사회부장 김기훈씨 '유서대필사건'의 중요한 증인으로 서북제 은 김씨의 여자 친구 홍성은(25·학원강사)씨가 23일 서울형사지법 항의25부(재판장 노원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기훈(27)씨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김동률 증언으로 출석할 예정이 있으나 미리 재판부에 출석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이번 재판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홍씨에 대한 신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소환장을 다시 보내기로 했으나 전민관에게서는 홍씨가 또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할 방침이어서 홍씨 출석을 끝마친 논란이 계속 확대될 조짐이다.

홍씨는 지난 21일 재판부에 보낸 편지에서 그간 김길진술 및 법정에서의 공판기밀 전 증인 신문을 통해 여러 차례 진술을 했고, 사건을 다시 재판부에 맡겼으나 미리 재판부에 출석하는 것에 괴롭기 때문에 법정에 서고 싶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홍씨는 김찰예서의 진술이 사실이며 현재 자신의 부모도 사건을 잊어가고 있는데 다시 법정에 나서면 부모에게도 불효를 하게 되니 재판부가 증인 제택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씨는 현재 집과 친척집을 오

는 줄인으로 신청해 이 가운데 흥우시민운동단체 회원 홍충희씨 등 5명을 다음과 같이 공판에 서 신문하도록 했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대유공업전

문대회보에 기고한 원고와 상남

디사랑단 학자회 및 종교원

주지사의 발행물 등 김씨와 강씨

원칙 20종을 즐기자로 재판부

에 제출했다.

[2] 1991년 10월 25일(금요일) 흥우편집 [5판]

## 사설

### 검찰쪽 증인 홍성은씨의 아리송함

법정에서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유서대필 헌법도 구속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대(전민련) 충무부장 김기훈씨는 전민련 국민지 전심에 걸맞은 일은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작은 전민련 기소내용부터 사람들을 살해 시켰던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훈씨의 유죄를 대신 베주였다면 세상을 며칠씩이나 하면서 강

씨를 구속한 뒤 그를 가능한 걸출하고 고소장을 하면서 하루하루 헤아려 왔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강

씨가 김기훈 유서대필 혐의로 체포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도 없이 강제로 기소해, 강씨의 변호인들이

심사증명으로 이를 제작부수로 했던 것이다. 그가 안나온

것이 아니라 김기훈이 변호인에서 균란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홍씨가 최근에 친구에게 '자금은 장비가 대체로 많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심경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보도된 홍씨의 출석의식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물론,

검찰은 홍성은씨로부터 참고인 진술들을 들은 전

후의 과정에서 위법이라고 비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김들은 홍씨를 증오함으로써 전술을 들으면서 법정시한인 6시간을 넘기며 며칠 밤을 불쌍히 두었고, 뒤에는 '보

호인단이 홍씨의 출석을 반대하는 것은 너

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센터 홍성은씨는 사건의 핵심인물이었다. 홍씨는 김기훈씨에게 김기훈씨의 한동도 대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예

수석까지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홍성은씨가 재판장에 나오지 않으면

세간의 흥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 빛냈다면 김들은 그를 중심으로 세우려고 더욱 노력해야 하고,

홍씨 자신도 재판장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재판부의 도덕성이 관

문제이고, 더구나 이 문제는 사회의 민주 발전

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강기훈씨와 그의 변호인단이 홍성은

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는 기자야 마땅하

며, 그래서 홍바른 재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신문 81. 11. 6 (5판) 1991년 11:

## 홍씨 비공개조견 법정증언 용의 재판부서 검찰 요청 거부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유서대필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기훈(27)씨에 대한 6차공판에서 증인으로 체택된 김씨의 여자 친구 홍성은(25)씨의 증언을 검찰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은 따르면 6월 오전에 열린 예정인 6차공판을 앞두고 홍씨와 가족들이 "재판에 나와 증언할 경우 언론 등의 주목을 받게 되므로 법정에 나올 수 없으나 비공개로 증언할 수 있으면 출석하겠다"고 밝혀 재판부에 비공개증언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

법합의25부(재판장 노원숙 부부장)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으로 둘째 홍씨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의 비밀개관행요청에 대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홍씨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홍씨가 계속 불출석의사를 밝히고 있고, 특히 출석할 경우라도 비공개로 증언하겠다고 해 재판부에 비공개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도 재판부에 불출석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공개재판

## 홍성은씨 제한적 공개증언 오늘 오후 보도진만 입회 허용키로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유서대필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6차 공판이 6일 서울형사재판부에서 열리게 됐다.

법합의25부(재판장 노원숙 부부장)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홍씨가 법정에 나와 공개증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홍씨의 입장은 고려해 보도진 일회 아래 제한적인 공개증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이에 앞서 스친창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진술을 했고 소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며 △강씨 가족과 전민련 간 계약 앞에서의 증언은 근간하다는 핫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 시작 뒤 홍씨의 이런 입장은 설명하고 변호인쪽에서 보도진의 입장이 허용된다면 일반 방청객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제한적 공개증언'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재판부는 7일 오후 2시 일반 방청객의 방청 없이 홍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 신문 81. 11. 8 (6판)

## 「수첩글씨」洪양진술엇갈려 유서대필 7차재판 "기억없다" "姜씨가 안쳤다"

검찰수사에 증언과 틀려 주목

이 스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담당재판부가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의 비밀개관행요청에 대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홍씨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홍씨가 계속 불출석의사를 밝히고 있고, 특히 출석할 경우라도 비공개로 증언하겠다고 해 재판부에 비공개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도 재판부에 불출석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공개재판

「洪양일파 진술 번복」  
수첩에 이론적증거 사실·기억 암었다.

迷宮 유서대필, 混疊日파 험선수설  
洪成銀씨 「수첩로모」[신일서] 기억았다. 姜씨 쓰지 않았다.

이론적증거로 수첩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증거로 증언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재판부는 재판장을 확장화하는 방향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론적증거로 수첩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증거로 증언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재판부는 재판장을 확장화하는 방향으로 조사하고 있다.

1988.6.18 종우편물(가)금인가

제1076호

## 유서사건 향방가를 '결정적' 증거

강기훈씨 변호인단 새 필적자료 2종 제시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의 변호인단은 7월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씨가 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며 새로운 필적자료 2종을 제시해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 필적자료들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어떤 필적자료와 확실하게 김씨의 필적을 일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자신하고 있어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이날 강씨에 대한 7차공판에서 제시한 자료를 하나는 김씨가 지난 4월초 작성한 자료로서 속초 동우전문대사건에 관해 속초 재야인사들과의 토론회 내용을 녹취한 공문 한 편이다.

변호인단은 이 자료가 당시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의 지시로 김씨 등에 의해 작성됐으며 작성된 뒤 끝마로 서씨에게 전네리 계속 전민련 사무실

— 김기설씨 향방가 내용 —  
기록본에 정작 향방가를 쓰지 않았던 김기설씨는 그에 대처해 향방가를 정작 향방가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기록본에 정작 향방가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 아버지, 어머니 —  
어버이를 입니다.  
온는 이내익을 입상했다는 생각을  
하내익은 아버지의 그려나. 있으나  
생각하니. 대지껏 되번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변호인단이 7일 김씨의 필적이라며 새로 제출한 필적(위)과 김씨의 분신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아래).

## 토론회 녹취 흥씨도 참여 사실 시인 조작공방 전민련수첩 복사본도 제출

의 서비 회상 안에 보관돼 왔다  
고 밝혔다.

이 자료가 주목받는 이유는 강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흥성은(25)씨가 김씨와 함께 녹취작업에 참여했으므로 눈으로 보아 유서와 동일한 글씨와 함께 글씨와 함께 적혀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4월5일에 김씨와 자위방에서 김씨가 흥씨 및 전청대협 간사 장관호씨와 함께 토론회 내용의 녹취정리작업을 했으며 김씨가 먼저 자신이 녹취한 부분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흥씨는 녹음된 내용을 4쪽 분량으로 직접 했다고 설명했다.

흥씨는 이날 중인신문에서 김

씨와 함께 정리작업을 했고 제 출된 증거에 자신이 정리한 부

분이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흥씨는 김씨가 바로 그날 보여 준 필적이라며 변호인단이 제출 한 공체필적에 대해 필적은 같아 보이나 글의 빽빽한 정도 등 이 다른 것 같아 김씨가 보여준 글씨인지 단언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한 공체에 흥씨 글씨가 함께 적혀 있고 서문식씨가 이를 전네란은 위 김

씨가 녹취한 부분 위에 가필한 글씨가 적혀 있어 김씨가 쓴 것 이 풀립없다며 서식을 증인으로 신청해 이를 입장키로 했다.

또 다른 제시증거자료는 조작

(O)재일 기자)

1988.6.18 종우편물(가)금인가

제1076호 (1988.6.18 종우편물(가)금인가)

1988.6.18 종우편물(가)금인가

한겨레

## 홍씨 검찰진술 반복

### 강기훈씨 7차공판 "수첩필적 강씨것 아니다" 변호인단 '대필' 반박 새 증거 제시

김기설씨 분신자살사건과 관련해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7차공판이 7일 서울형사지법 학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강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씨의 여자친구 홍성은(25)씨에 대한 증인신조사를 앞두고 홍씨의 수첩에 김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마

이와 함께 강씨의 변호인단은 "강씨가 유서를 쓰지 않았고 수첩도 조작하지 않았음을 일증할 결정적 증거"라며 변호인쪽 증거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적 및 수첩복사본 2종도 제출했다.

홍씨는 이날 신문에서 검찰에 서의 진술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그 진술내용 중 강씨가 김씨 분신 뒤인 지난 5월10일 자신의 수첩에 '김기설'이라는 이름과 전민련 전화번호를 적어놓았다는 부

분에 대해서는 "강씨가 이 글씨를 적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며 이를 반복했다.

이 부분은 홍씨 진술 가운데 강씨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검찰은 이 진술을 근거로 강씨가 홍씨에 대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홍씨의 수첩에 김

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마

치 김씨가 쓴 것처럼 검찰에서

증인신문에서 강씨가 적었다고

진술한 것은 수첩이 내 헨드백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는 강씨가 유서를 대필했음을 나

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홍씨는 지난 5월14일 김찰에서

의 1차조사에서 이 글씨가 지난

4월께 김씨가 적어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같은달 17일 2차조사

에서는 강씨가 적어놓은 것이라

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며 검

찰은 이 진술에 대해 법원에 증

거보전신청을 마쳤다.

변호인단은 이날 신문이 끝난

뒤 지난 4월6일에 홍씨와 김씨

및 전청대협 간부 장준호(25)씨

등 3명이 함께 작성했다는 속초

동우전문대 사태 관련 대답내용

이 적힌 공책 1권과 김씨 수첩

이 전민련으로 넘어간 5월8일 당

일에 복사원이 수첩의 전화번호

부분 사본 2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 김기설씨 새 필적 공개

강기훈씨 8차공판 변호인단, 김씨 채무각서 제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  
신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이  
단체 충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8차 공판이 20일 서울형사  
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우 부  
장판사) 실리로 열려 전민련 인  
권위원회 서준식씨 등 변호인쪽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서씨에 대한 신문에서 변  
호인들은 "올해 2월 법원에 만아  
무개씨(출판업)로부터 3백만 원을  
빌리면서 적립 써준 각서"라며  
새로운 필적 1장을 서씨에게 제  
시한 뒤 재판부에 넣으며 서씨는  
이와 관련해 "김씨에게 돈을 빌  
려줬다"고 주장하는 한씨가 올해  
6월초 명동성당에 찾아와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 각서를  
나에게 주었으나 김씨의 명예를  
위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구  
속되기 직전에 전민련 관계자에  
게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이어 변호인단이 지난  
7차공판에서 제출한 속초 동우전  
문대 사태 관련 좌담회 녹취서에  
대해 "당시 김씨로부터 연필로  
기록된 문장을 받아 검정펜으로  
수정과 가필을 했다"면서 "법원  
에 제출된 문건에 가필된 글씨가  
내 글씨가 분명해 김씨가 쓴 것  
이 틀림없다"고 진술했다. 검찰  
도 이에 대해 스유서 대필 강방  
김씨가 써준 것이라고 밝힌 데도

기서  
변호인 김기설은  
마지지 못한 경우  
이번에는 서비스는  
마숙합니다.  
1971. 2. 13  
— 김기설 약자 —

김씨 각서와 유서 강기훈씨 변호인단이 20일 재판부에 제출한 김기설씨의 채무각서

아버지, 어머니 —  
어버이날입니다.  
온은 이네이를 사랑합니다  
하야이는 어버이의 의미가 드  
시됩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한국을 잘해 해운지 못되자

— 7/12 —

이 5월부터 시작됐는데도 뒤늦게  
속되기 직전에 전민련 관계자에  
게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이어 변호인단이 지난  
7차공판에서 제출한 속초 동우전  
문대 사태 관련 좌담회 녹취서에  
대해 "당시 김씨로부터 연필로  
기록된 문장을 받아 검정펜으로  
수정과 가필을 했다"면서 "법원  
에 제출된 문건에 가필된 글씨가  
내 글씨가 분명해 김씨가 쓴 것  
이 틀림없다"고 진술했다. 검찰  
도 이에 대해 스유서 대필 강방  
김씨가 써준 것이라고 밝힌 데도

저는 지난 4월 김씨로부터 직필  
녹취서가 제출됐고 당시 김씨  
가 녹취한 부분은 법원에 제출된  
문건보다 글씨가 짜赜했다는, 당  
시 녹취에 함께 참여한 김씨의  
여자친구 홍성은씨의 진술 등을  
들어 제출된 녹취서가 김씨가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숭의여전  
총학생회장 이보령(22·여)씨는  
"지난 5월20일 김씨 본인 위에  
있었던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써준 것이라고 밝힌 데도

이 메모지가 전민련에서 조작됐  
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동안의 검  
찰쪽 주장을 반박했다.

97.7.21. 서  
기서  
변호인 김기설은  
마지지 못한 경우  
이번에는 서비스는  
마숙합니다.  
1971. 2. 13  
— 김기설 약자 —

人權변호사의 惡手

기자회견 하루 전  
날 전민련에서 김씨 필적을 찾  
고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 찾아낸  
것"이라며 "당시 메모지 원본  
을 전민련에 갖다주기 전에 3~4  
부를 복사해 놓았으며 이 가운데  
1부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  
다.  
이씨는 이어 변호인단이 법원  
에 제출된 메모지 원본과 검찰수  
사 기록에 첨부된 사본을 제시하  
자 "두 문건이 똑 같으며 법원에  
제출된 원본은 본인이 김씨로부터  
전민련은 것이 김씨로부터  
제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동안  
의 검찰측 주장에 반박했다.

기서  
변호인 김기설은  
마지지 못한 경우  
이번에는 서비스는  
마숙합니다.  
1971. 2. 13  
— 김기설 약자 —

김기훈씨 변호인단이 20일 김기설씨가 직필  
했던 재판부에 낸 채무이월 각서

## 김기설씨 새필적 제시

강기훈씨공판 서준식씨 "유서글씨와 같다"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  
신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이  
단체 충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8차 공판이 20일 서울형사  
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우 부  
장판사) 실리로 열려 전민련 인  
권위원회 서준식씨 등 변호인  
쪽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  
다.  
이날 서씨에 대한 신문에서 변  
호인단은 "올해 2월 김씨가 한  
무개씨(출판업)로부터 3백만 원을  
빌리면서 적립 써준 각서"라며  
새로운 필적 1장을 서씨에게 제  
시한 뒤 재판부에 넣으며 서씨는  
이와 관련해 "김씨에게 돈을 빌

려겠다고 주장하는 한씨가 올해  
6월초 명동성당에 찾아와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 각서를  
나에게 주었으나 김씨의 명예를  
위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구  
속되기 직전에 전민련 관계자에  
제출됐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또 조각서비가 있고 있  
는 김씨의 전민련수첩에 대해 "김  
씨가 숨자기 전 수첩에 일부 내용  
을 적어놓는 것을 직필 본 적이  
있으며 일정 등 내용이 대부분  
김씨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조작  
된 것일 수 없다"며 김찰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숭의여전  
총학생회장 이보령(22·여)씨는

총학생회장 이보령(22·여)씨는  
"지난 5월20일 김씨, 본인 위에  
있었던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써준 것이라고 밝힌 데도

저는 지난 4월 김씨로부터 직필  
기자회견 하루 전

57. 11. 27

## 유서 姜씨 필적 아니다.

한국언론에서 유서사건에 대한 보도는 다음과 같다.

**한국 언론 보도**

1991년 11월 27일 **한국일보** 제1092호  
제1면  
[1991.11.27 뉴스레터 제1092호]  
[1991.11.27 뉴스레터 제1092호]

**유서사건 중인 일본 필적감정가 오니시**

기시성씨와 강기훈씨의 필적은 감정한 뒤 '유서의 필적은 김씨의 필적과 같다'고 밝힌 바 있는 일본인 필적감정가 오니시 요시오(73·일본 도쿄대학 박물관 명예관련·사진)가 27일 일일 강씨의 9자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26일 내한해 "강씨의 필적은 유서의 필적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1949년부터 70년 경년 되회할 때까지 일본 도쿄국립 박물관에서 고미술·서예·문서 등의 감정을 맡아온 오니시는 51년부터 40여년간 일본 경시청과 법원의 회의에 따라 필적·인장 등의 진위를 감정해온 일본 최고의 권위자이다.

오니시는 법정에 나가기에 앞서 26일 서울 종로구 연세동

**검선 조사로 한글감정도 가능**

40년간 경험근거 과학수사원 '엉터리'

한국기독교회회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씨의 필적은 유서의 필적과 같다"고 밝힌 바 있는 일본인 필적감정은 엉터리"라고 분명히 밝혔다.

—일본에서의 필적감정 경력은?

—지난 51년부터 일본 경시청이 회의한 필적을 감정해왔으며 경시청 문서감정과에서 필적감정에 대해 강희도 한 허 있다. 지난 74년에는 경시청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필적감정으로 범죄감식에 공헌한 공로'로 감사장을 반기기도 했다.

—김씨와 강씨의 필적은 같았던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나기다히라 셀카치 변호사가 회의에 참가 했다.

—한글을 감정한 경험은?

—처음이다. 그래서 제일 한국인 친구들을 통해 한글의 구성을 험하고 필법 등을 자세히 설명 들었다.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이

한글 필적을 감정하는게 가능한 한가?

—한글을 모른다 하더라도 한글의 점과 선을 조사해보면 글을 쓴 이의 습관과 특징을 알아내는 게 가능하다. 이는 한자·고문자·일본어를 분석하는 것과 동일하다. 한글 필적 감정도 가능하다고 자주 한다.

—간접에 사용된 자모는?

—1. 유서 2. 수첩 3. 강씨의 유서 4. 강씨의 최근필적 5. 증거문서 6. 증거문서 7. 상황일지 8. 볼트 9. 이에서 풀 9가지를 분석했다.

—강경질하는가?

—강경질하는 모든 김씨의 3~4를 제외하는 모든 김씨의 글씨를 판정되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1년에 30여 건의 필적감정을 하고 있다는 오니시는 "혹시 법원에서 내가 증언하고 나오면 한국경찰이 징아기는 것 아니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이상수 기자)

1991年11月28日 (木曜日) (陽曆 10月23日 王實)

# 검찰·변호인 13시간 「筆跡공방」

姜씨 9차공판 日감정가 "金씨것" 증언싸고

검찰  
유시씨

# 30여장분량 조목조목 반박 일부잘못될수도·다소후퇴

司法사상 최장재판



◇ 日 감정가 일본인 필적 감정가  
오니시 요시오씨(73)가  
13시간여의 증언을 마치고 법정밖으로  
나오고 있다. [東大根기자]

한국언론에서 유서사건에 대한 보도는 다음과 같다.

**한국 언론 보도**

1991년 11월 28일 **한국일보** 제1면  
[1991.11.28 뉴스레터 제1093호]

# 日증인 일부오류 是認 麥基勸씨 9차공판 어제 자정까지 강행

제13380號

論戰 빵·김밥 머으며 強行  
한국과는 日人 갑작이 수치「검찰반대」  
고령불구 오니시氏 끝까지 증언 老益壯

팽팽한 論戰 빵·김밥먹으며 強行

କାହାର ପାଇଁ କାହାର ପାଇଁ  
କାହାର ପାଇଁ କାହାର ପାଇଁ  
କାହାର ପାଇଁ କାହାର ପାଇଁ  
କାହାର ପାଇଁ କାହାର ପାଇଁ

한국의 철학자들은 그들의 철학을 통해 세계관을 확장하고, 개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노력합니다.

한국 대학교육  
국제화 전략

校正  
— 1 —

제 10회 전국동아리 대회에서 우승한 팀으로서 10월 1일에는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함께 축하를 받았습니다.

# “유서필적 강씨것 아니다”

강기훈씨 9차공판 일본인 감정가 법정증언

김기설씨 본선사건과 관련해  
김씨 유언장을 대법원의 험포로 구속  
기소된 전민진씨 충무부상장·강기현  
7)씨에 대한 합의 1925년 2월 27일 서  
울형사지법 제25부재판부 판결문  
원복(부장판사) 심리로 일어나 있  
았던 미지기록이다. 유언장은 김  
간선이 없기 때문에 유서가 김씨  
갈비라고 주장하는 바와 겹친 것도  
증인간이 없는 것이 상당수 나오  
고 유서와 김씨 갈비에 증인성이  
있는 것도 짧게 판단하면서 강경정  
판결이 밝혔다.

제일 한국인을 보조사로 채용  
해 도움을 한가지로 '김정길'이면  
서 '특정 자이름이나 모임의 수를  
잘못 계산하고, 강경서에 일부  
예회가 존재하는 부분을 생략하  
고 본문을 칠해. 같은 점은 인정  
했다.

오너시는 이어 국과수 강정서에  
한 헌정경·희대부주기·비교대  
예회가 존재하는 부분을 생략하  
고 본문을 칠해. 같은 점은 인정  
했다.

온전히 살기경험은 아니니라요? 그렇지만 그걸로는 그만이 아니라 나를 살피는 글씨에서 알 수 있듯이 나란다는 특징으로 구별하고 있는 '나'자와 모음과 종성·방향의 두 명령어가 강조해서 내용과 달리 무리로 묶여서 글씨의 혼란을 일으고 있다. '아이'자에 '아이비'라고 하면 '한번도'에 '한번도'라고 하면

필과 학수(학수구)과 학수(교수수)의 강  
정질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전술  
했다.  
이에 대해 김 활은 오니시의 강  
정서에 따르면 강비는 발명 'a'  
자를 쓸 때 중간에 가로선을 그  
는 반면 김비와 유서 글씨는 중  
국 오니시는 한글의 체계를 전  
하고 사용하면서 모음의 숫자도  
해아리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자  
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완전히 알  
못된 강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와 관련해 오니시는 "김정당

1961. 1. 1. 유서  
[1] [한국문화원]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살피는 시각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의 활동은 문화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정경감찰 출다리기』

『한국의 민족학자들』(한국민족학회, 1998)에 실린 글입니다.

## “감정 일부착오 필적판단에 영향없어” 일본감정가, 검찰 반박

강기훈씨 10차공판

김기설씨 분신사건과 관련해 김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민현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10차 공판이 28일 서울형사지법 학법25부(재판장 노원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즐인으로 나온 일본인 필적 감정 가 오니시 요시오(73)에 대한 번호인과 보증 신문이 진행됐다.

오니시는 보증신문에서 “필적 감정은 필자의 고유한 필적상의 특징을 찾아내 유사비를 판정하는 것이며 고유한 특징이 100%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고 언서 “감정서에는 김씨와 강씨 필적의 차이점을 단정적으로 표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양자의 특징이 상대방 글씨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로 상이함을 전혀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기설씨는 “필자와 수신자는 일부착오가 있다라도 필연상의 특징에 대한 판단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며 “지난 27일의 반대신문에서 김기설은 일본인으로 나온 일본인 필적 감정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신문에 지난 뒤 재판부는 번호인과 유서를 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에 보였을 때 “감정없이 심리를 충결했다.”

번호인단은 재판부의 강경제안

과 관련해 “이미 신뢰성이 논란이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번호인과 같은 글씨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강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까지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 이유를 제보했다.

이 대체 검찰은 재판부의 필적들은 김씨 것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기설은 “지난 1차로 김씨 글씨임이 다른 사람이 유서와 필적이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와 있을”과 감정해 같다고 나온 것만 김씨 필적으로 인정하고 이것들을 다시 유서와 감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기는 오니시에 대한 보증반대신문을 통해 “오니시의 감정은 27일의 신문과정에서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고 오니시 자신도 이를 시인했다.”면서 “결국 이번 김기는 기독교교회협의회(NCC)에서 보면 책임 한국인 김정보조인들이 조작한 것으로 수첩조작, 번호인단의 진술 세면책의 김정조작”이라고 말했다.

11월 29일 9시 30분

10차

10월 28일

10월 27일

10월 26일

10월 25일

10월 24일

10월 23일

10월 22일

10월 21일

10월 20일

10월 19일

10월 18일

10월 17일

10월 16일

10월 15일

10월 14일

10월 13일

10월 12일

10월 11일

10월 10일

10월 9일

10월 8일

10월 7일

10월 6일

10월 5일

10월 4일

10월 3일

10월 2일

10월 1일

9월 30일

9월 29일

9월 28일

9월 27일

9월 26일

9월 25일

9월 24일

9월 23일

9월 22일

9월 21일

9월 20일

9월 19일

9월 18일

9월 17일

9월 16일

9월 15일

9월 14일

9월 13일

9월 12일

9월 11일

9월 10일

9월 9일

9월 8일

9월 7일

9월 6일

9월 5일

9월 4일

9월 3일

9월 2일

9월 1일

8월 31일

8월 30일

8월 29일

8월 28일

8월 27일

8월 26일

8월 25일

8월 24일

8월 23일

8월 22일

8월 21일

8월 20일

8월 19일

8월 18일

8월 17일

8월 16일

8월 15일

8월 14일

8월 13일

8월 12일

8월 11일

8월 10일

8월 9일

8월 8일

8월 7일

8월 6일

8월 5일

8월 4일

8월 3일

8월 2일

8월 1일

7월 31일

7월 30일

7월 29일

7월 28일

7월 27일

7월 26일

7월 25일

7월 24일

7월 23일

7월 22일

7월 21일

7월 20일

7월 19일

7월 18일

7월 17일

7월 16일

7월 15일

7월 14일

7월 13일

7월 12일

7월 11일

7월 10일

7월 9일

7월 8일

7월 7일

7월 6일

7월 5일

7월 4일

7월 3일

7월 2일

7월 1일

6월 30일

6월 29일

6월 28일

6월 27일

6월 26일

6월 25일

6월 24일

6월 23일

6월 22일

6월 21일

6월 20일

6월 19일

6월 18일

6월 17일

6월 16일

6월 15일

6월 14일

6월 13일

6월 12일

6월 11일

6월 10일

6월 9일

6월 8일

6월 7일

6월 6일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6월 2일

6월 1일

5월 31일

5월 30일

5월 29일

5월 28일

5월 27일

5월 26일

5월 25일

5월 24일

5월 23일

5월 22일

5월 21일

5월 20일

5월 19일

5월 18일

5월 17일

5월 16일

5월 15일

5월 14일

5월 13일

5월 12일

5월 11일

5월 10일

5월 9일

5월 8일

5월 7일

5월 6일

5월 5일

5월 4일

5월 3일

5월 2일

5월 1일

4월 30일

4월 29일

4월 28일

4월 27일

4월 26일

4월 25일



# 姜基勳씨 7년구형

유서代筆 결심 검찰 국科搜감정 들어

제14249호 96.12.6. 3판 6면

## 「遺書」 친필인가 대필인가

洪양·간장인·진수의 죄·무죄

국科搜감정·인·전·여부가

## 姜基勳 쟁점

「유서代筆」……白殺방조

7년 구형

## 姜基勳 쟁점

국科搜감정·인·전·여부가

## 姜基勳 쟁점

「유서代筆」……白殺방조

「유서代筆」……白殺방조

제8160호 96.12.5. 3판 6면

## 법원 선고 남긴 유서 대필 공방

## 科搜研 감정 채택도 쟁점

완벽한 증거없어 論難 안꺼질듯

# 姜基勳씨 7년 구형

「유서代筆」……白殺방조

## 자살방조罪 적용할까



1991.12.20 경기2면

## ‘유서’논란 강기훈씨 오늘 선고공판

재판부 “증거 미흡 진실판단에 어려움” 고심

분신 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  
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선고공판  
이 10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  
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자살방조  
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7년, 자살정  
지3년을 구형한  
이번 사건에 대  
해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진  
다는 점에서 국  
민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아와 검찰의 도  
덕성, 권위가 걸려 있고 그동안  
11차례의 공판을 통해 변호인단  
과 검찰이 중인과 증거서류를  
제시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  
친 이번 사건은 강씨에 대해 유  
죄와 무죄 그 어느쪽 판단이 내  
려지든지 큰 파장을 불고 온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담당재판부인 합의25부(재판  
장 노원숙 부장판사)는 최근까  
지도 판결을 두고 25부 판사를  
간에 합의에 상당한 난항을 겪  
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인  
노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이 이뤄  
진 뒤에도 “유죄를 선고했을 경  
우로 예상되고 있다.

도 대립되는 양쪽의 승복을 받  
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민”  
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관건은 국립과학  
수사연구소(국파수)의 감정결과

에 관한 재판부가 신빙성을 줄  
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인  
노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이 이뤄  
진 뒤에도 “유죄를 선고했을 경  
우로 예상되고 있다.”

변호인 단은 “재판부가 공정한 판단  
을 한다면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며 “그동안 재판 과정  
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고 소감을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 사건의 특성상 대법원까  
지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끝  
바로 항소심 준비에 들어가겠  
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가 유죄  
를 선고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면서도 재판부의 동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 한 고위관계자는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같이 긴  
장된 마음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파수의 감정결과  
를 재판부가 무시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재판부 공정판단 기대…무죄 확신  
검찰 과학수사연 감정결과 무시 못할것**

우 나중에라도 제3자가 나타나  
유서를 대필했다고 양심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며 심증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법원이 국파수 감정을 대부분  
증거로 선택해왔고 현재로서는  
증거로는 유일한 감정기반에  
관심을 반영할지는 미지수”  
라며 “유·무죄 판결, 그 어느것

재판부는 “국파수의 감정이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다면 어떻게 되는가”라며 심증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법원이 국파수 감정을 대부분  
증거로 선택해왔고 현재로서는  
증거로는 유일한 감정기반에  
관심을 반영할지는 미지수”  
라며 “유·무죄 판결, 그 어느것

김창국 변호사 등 강씨 변호

인단은 “재판부가 공정한 판단  
을 한다면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며 “그동안 재판 과정  
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고 소감을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 사건의 특성상 대법원까  
지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끝  
바로 항소심 준비에 들어가겠  
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가 유죄  
를 선고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면서도 재판부의 동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 한 고위관계자는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같이 긴  
장된 마음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파수의 감정결과  
를 재판부가 무시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 유서代筆 등 有罪 인정 姜基勲씨 3년刑 선고



변호인·검찰 刑量에 불복 항소키로

과학수사研 감정은 公正  
焚身 말루않고 自殺방조

서울地法

제6174호 1991년 12월 20일 일요일

# 在野의 도덕상」 치명적 타격

1. 심판 공방 결론

제6175호 1991년 12월 27일 일요일

# 피고이들의 반발 노란소지

2. 心靈에 큰 비중

제6176호 1991년 12월 27일 일요일

# 국科搜 감정결과 모두 인정 주목

사건 후 美씨 행적도 결정적 증거

3. 德才의 한 차 산방 조 토론

「人間은 차표 국장으로서 어떤 대처를 취할지?」

제930호 1992년 1월 26일 일요일

[제3증 풍우편물(가) 금인기]

**제930호**

[제3증 풍우편물(가) 금인기]

1. 雖有罪, 不仁可認  
2. 有罪, 不仁可認

3. 有罪, 不仁可認

4. 有罪, 不仁可認

5. 有罪, 不仁可認

6. 有罪, 不仁可認

7. 有罪, 不仁可認

8. 有罪, 不仁可認

9. 有罪, 不仁可認

10. 有罪, 不仁可認

11. 有罪, 不仁可認

12. 有罪, 不仁可認

13. 有罪, 不仁可認

14. 有罪, 不仁可認

15. 有罪, 不仁可認

16. 有罪, 不仁可認

17. 有罪, 不仁可認

18. 有罪, 不仁可認

19. 有罪, 不仁可認

20. 有罪, 不仁可認

21. 有罪, 不仁可認

22. 有罪, 不仁可認

23. 有罪, 不仁可認

24. 有罪, 不仁可認

25. 有罪, 不仁可認

26. 有罪, 不仁可認

27. 有罪, 不仁可認

28. 有罪, 不仁可認

29. 有罪, 不仁可認

30. 有罪, 不仁可認

31. 有罪, 不仁可認

32. 有罪, 不仁可認

33. 有罪, 不仁可認

34. 有罪, 不仁可認

35. 有罪, 不仁可認

36. 有罪, 不仁可認

37. 有罪, 不仁可認

38. 有罪, 不仁可認

39. 有罪, 不仁可認

40. 有罪, 不仁可認

41. 有罪, 不仁可認

42. 有罪, 不仁可認

43. 有罪, 不仁可認

44. 有罪, 不仁可認

45. 有罪, 不仁可認

46. 有罪, 不仁可認

47. 有罪, 不仁可認

48. 有罪, 不仁可認

49. 有罪, 不仁可認

50. 有罪, 不仁可認

51. 有罪, 不仁可認

52. 有罪, 不仁可認

53. 有罪, 不仁可認

54. 有罪, 不仁可認

55. 有罪, 不仁可認

56. 有罪, 不仁可認

57. 有罪, 不仁可認

58. 有罪, 不仁可認

59. 有罪, 不仁可認

60. 有罪, 不仁可認

61. 有罪, 不仁可認

62. 有罪, 不仁可認

63. 有罪, 不仁可認

64. 有罪, 不仁可認

65. 有罪, 不仁可認

66. 有罪, 不仁可認

67. 有罪, 不仁可認

68. 有罪, 不仁可認

69. 有罪, 不仁可認

70. 有罪, 不仁可認

71. 有罪, 不仁可認

72. 有罪, 不仁可認

73. 有罪, 不仁可認

74. 有罪, 不仁可認

75. 有罪, 不仁可認

76. 有罪, 不仁可認

77. 有罪, 不仁可認

78. 有罪, 不仁可認

79. 有罪, 不仁可認

80. 有罪, 不仁可認

81. 有罪, 不仁可認

82. 有罪, 不仁可認

83. 有罪, 不仁可認

84. 有罪, 不仁可認

85. 有罪, 不仁可認

86. 有罪, 不仁可認

87. 有罪, 不仁可認

88. 有罪, 不仁可認

89. 有罪, 不仁可認

90. 有罪, 不仁可認

91. 有罪, 不仁可認

92. 有罪, 不仁可認

93. 有罪, 不仁可認

94. 有罪, 不仁可認

95. 有罪, 不仁可認

96. 有罪, 不仁可認

97. 有罪, 不仁可認

98. 有罪, 不仁可認

99. 有罪, 不仁可認

100. 有罪, 不仁可認

101. 有罪, 不仁可認

102. 有罪, 不仁可認

103. 有罪, 不仁可認

104. 有罪, 不仁可認

105. 有罪, 不仁可認

106. 有罪, 不仁可認

107. 有罪, 不仁可認

108. 有罪, 不仁可認

109. 有罪, 不仁可認

110. 有罪, 不仁可認

111. 有罪, 不仁可認

112. 有罪, 不仁可認

113. 有罪, 不仁可認

114. 有罪, 不仁可認

115. 有罪, 不仁可認

116. 有罪, 不仁可認

117. 有罪, 不仁可認

118. 有罪, 不仁可認

119. 有罪, 不仁可認

120. 有罪, 不仁可認

121. 有罪, 不仁可認

122. 有罪, 不仁可認

123. 有罪, 不仁可認

124. 有罪, 不仁可認

125. 有罪, 不仁可認

126. 有罪, 不仁可認

127. 有罪, 不仁可認

128. 有罪, 不仁可認

129. 有罪, 不仁可認

130. 有罪, 不仁可認

131. 有罪, 不仁可認

132. 有罪, 不仁可認

133. 有罪, 不仁可認

134. 有罪, 不仁可認

135. 有罪, 不仁可認

136. 有罪, 不仁可認

137. 有罪, 不仁可認

138. 有罪, 不仁可認

139. 有罪, 不仁可認

140. 有罪, 不仁可認

141. 有罪, 不仁可認

142. 有罪, 不仁可認

143. 有罪, 不仁可認

144. 有罪, 不仁可認

145. 有罪, 不仁可認

146. 有罪, 不仁可認

147. 有罪, 不仁可認

148. 有罪, 不仁可認

149. 有罪, 不仁可認

150. 有罪, 不仁可認

151. 有罪, 不仁可認

152. 有罪, 不仁可認

153. 有罪, 不仁可認

154. 有罪, 不仁可認

155. 有罪, 不仁可認

156. 有罪, 不仁可認

157. 有罪, 不仁可認

158. 有罪, 不仁可認

159. 有罪, 不仁可認

160. 有罪, 不仁可認

161. 有罪, 不仁可認

162. 有罪, 不仁可認

163. 有罪, 不仁可認

164. 有罪, 不仁可認

165. 有罪, 不仁可認

166. 有罪, 不仁可認

167. 有罪, 不仁可認

168. 有罪, 不仁可認

169. 有罪, 不仁可認

170. 有罪, 不仁可認

171. 有罪, 不仁可認

172. 有罪, 不仁可認

173. 有罪, 不仁可認

174. 有罪, 不仁可認

175. 有罪, 不仁可認

176. 有罪, 不仁可認

177. 有罪, 不仁可認

178. 有罪, 不仁可認

179. 有罪, 不仁可認

180. 有罪, 不仁可認

181. 有罪, 不仁可認

182. 有罪, 不仁可認

183. 有罪, 不仁可認

184. 有罪, 不仁可認

185. 有罪, 不仁可認

186. 有罪, 不仁可認

187. 有罪, 不仁可認

188. 有罪, 不仁可認

189. 有罪, 不仁可認

190. 有罪, 不仁可認

191. 有罪, 不仁可認

192. 有罪, 不仁可認

193. 有罪, 不仁可認

194. 有罪, 不仁可認

195. 有罪, 不仁可認

196. 有罪, 不仁可認

197. 有罪, 不仁可認

198. 有罪, 不仁可認

199. 有罪, 不仁可認

200. 有罪, 不仁可認

201. 有罪, 不仁可認

202. 有罪, 不仁可認

203. 有罪, 不仁可認

204. 有罪, 不仁可認

205. 有罪, 不仁可認

206. 有罪, 不仁可認

207. 有罪, 不仁可認

208. 有罪, 不仁可認

209. 有罪, 不仁可認

210. 有罪, 不仁可認

211. 有罪, 不仁可認

212. 有罪, 不仁可認

213. 有罪, 不仁可認

214. 有罪, 不仁可認

215. 有罪, 不仁可認

216. 有罪, 不仁可認

217. 有罪, 不仁可認

218. 有罪, 不仁可認

219. 有罪, 不仁可認

220. 有罪, 不仁可認

221. 有罪, 不仁可認

222. 有罪, 不仁可認

223. 有罪, 不仁可認

224. 有罪, 不仁可認

225. 有罪, 不仁可認

226. 有罪, 不仁可認

227. 有罪, 不仁可認

228. 有罪, 不仁可認

229. 有罪, 不仁可認

230. 有罪, 不仁可認

231. 有罪, 不仁可認

232. 有罪, 不仁可認

233. 有罪, 不仁可認

234. 有罪, 不仁可認

235. 有罪, 不仁可認

236. 有罪, 不仁可認

237. 有罪, 不仁可認

238. 有罪, 不仁可認

239. 有罪, 不仁可認

240. 有罪, 不仁可認

241. 有罪, 不仁可認

242. 有罪, 不仁可認

243. 有罪, 不仁可認

244. 有罪, 不仁可認

245. 有罪, 不仁可認

246. 有罪, 不仁可認

247. 有罪, 不仁可認

248. 有罪, 不仁可認

249. 有罪, 不仁可認

250. 有罪, 不仁可認

251. 有罪, 不仁可認

252. 有罪, 不仁可認

253. 有罪, 不仁可認

254. 有罪, 不仁可認

255. 有罪, 不仁可認

256. 有罪, 不仁可認

257. 有罪, 不仁可認

258. 有罪, 不仁可認

259. 有罪, 不仁可認

260. 有罪, 不仁可認

261. 有罪, 不仁可認

262. 有罪, 不仁可認

263. 有罪, 不仁可認

264. 有罪, 不仁可認

265. 有罪, 不仁可認

266. 有罪, 不仁可認

267. 有罪, 不仁可認

268. 有罪, 不仁可認

269. 有罪, 不仁可認

270. 有罪, 不仁可認

271. 有罪, 不仁可認

272. 有罪, 不仁可認

273. 有罪, 不仁可認

274. 有罪, 不仁可認

275. 有罪, 不仁可認

276. 有罪, 不仁可認

277. 有罪, 不仁可認

278. 有罪, 不仁可認

279. 有罪, 不仁可認

280. 有罪, 不仁可認

281. 有罪, 不仁可認

282. 有罪, 不仁可認

283. 有罪, 不仁可認

284. 有罪, 不仁可認

285. 有罪, 不仁可認

286. 有罪, 不仁可認

287. 有罪, 不仁可認

288. 有罪, 不仁可認

289. 有罪, 不仁可認

290. 有罪, 不仁可認

291. 有罪, 不仁可認

292. 有罪, 不仁可認

293. 有罪, 不仁可認

294. 有罪, 不仁可認

295. 有罪, 不仁可認

296. 有罪, 不仁可認

297. 有罪, 不仁可認

298. 有罪, 不仁可認

299. 有罪, 不仁可認

300. 有罪, 不仁可認

에만 진짜 뇌물죄... 이에만 대처해 나온 모금



265號 9/12/2013 (陰曆 11月16日 乙丑)



美苏助从

## 유서 「代筆」 인정

서울地法 「자살방조」 적용

절대眞實」  
못밝힌「次善

유서代筆 有罪판결 배경

國科搜·洪양·진술·신뢰

재판부도 증거능력 잘등...불씨는 여전

지로  
게 이전에야 학자는 역사  
소설의 대학원을 다수이

로 2~3년에서 계속  
되어 정상으로 예상된다.

卷之二

ପ୍ରକାଶନ କେନ୍ଦ୍ର

卷之三

이 봉헌함으로써 꽃피고 인생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

고향에  
지르기 도록다.

재판부조차「확신이 없다」  
면서 거짓증언이었다.

ପ୍ରକାଶକ ପତ୍ର

속사 봄 밤에  
나는 유희를  
나는 유희를

卷之三

## 국科搜 감정은 공정

## 유서代筆 - 자살방조 인정 姜基勲씨 징역 3년 선고



○全體病리 椎서대증 痘의로 기소된 患者들이고인이

나를 끌어당기고 싶어. 그게 그의 목표였던 것이다. 그는 그의 목표를 성취한 듯한 기쁨을 드러냈다. 그의 목표는 그에게는 그만의 행복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만의 행복이었다. 그는 그의 목표를 성취한 듯한 기쁨을 드러냈다. 그의 목표는 그에게는 그만의 행복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만의 행복이었다. 그는 그의 목표를 성취한 듯한 기쁨을 드러냈다. 그의 목표는 그에게는 그만의 행복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만의 행복이었다. 그는 그의 목표를 성취한 듯한 기쁨을 드러냈다. 그의 목표는 그에게는 그만의 행복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만의 행복이었다. 그는 그의 목표를 성취한 들풀처럼 기쁨을 드러냈다.

# 고심끝 국科搜공신력 인정

# 한겨레

## 강기훈씨 징역 3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유서대필 인정 불가피”  
국과수 필적감정 모두 수용

분신 자살한 전민련 사회부부장  
김기훈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민련 충무  
부장 강기훈(27)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부(재판장  
노원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에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강씨에게 자살방조죄와 국가보안  
법 위반·이직단체 기밀과 이직표  
현물 소지·죄를 적용해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다는 국  
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과  
증거에 따라 강씨의 유서대필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러나 유서대필의 인정이 재판의  
진실에 부합하지는 알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단이 제출  
한 증거 서류와 증인들의 진언은  
국회 감정을 배척할 수 있을  
만큼 증거성이 없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을 만류하지 않  
고 유서를 대필한 것은 일종의  
상임인임으로 일컬어 치하야 하  
나 유서대필 경위·일시·장소 등이  
밝혀지지 않아 증명을 선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 사건은 분신자살 발  
생 20일 13일 만에 유서대필 혐의  
등으로 1차 사법적 판단이 내  
려졌다. 판결은 징역 3년, 자격정  
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심리에  
는 거짓이 진실을 이겼으나 이  
는 반드시 그 경계를 드러낼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법부 정권유지 도구로  
전세계의 웃음거리 판결”

전민련·민가협 성명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은 20일 강기훈씨 선고와 관련해  
선고판문에서 “유서대필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다는  
증거에 따라 강씨의 유서대필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러나 유서대필의 인정이 재판의  
진실에 부합하지는 알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을 만류하지 않  
고 유서를 대필한 것은 일종의  
상임인임으로 일컬어 치하야 하  
나 유서대필 경위·일시·장소 등이  
밝혀지지 않아 증명을 선고할 수

있지 않았는데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부에 실한 이유를 보냈다.

한편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화  
신이 있다’면서 국과수 감정만으  
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의지정  
용기가 부족한 결과”라며 “심리에  
는 거짓이 진실을 이겼으나 이  
는 반드시 그 경계를 드러낼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촉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유서대필이  
국과수·검찰의 암워입고 소신과 감  
정했고, 스감정인인 분서분석실장  
정형영(52)씨가 한글 감정의 전  
위자라는 그 스전민련에서 김기  
훈성을 인정하는 한글 감정과  
증거에 따라 강씨의 유서대필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러나 유서대필의 인정이 재판의  
진실에 부합하지는 알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본은 오니  
시 요시오(71)의 김정은, 오니시  
가 한글을 전혀 모르고 사본으로  
인정되는 판단은 그만한 이유로  
감정했으며 한글 자모 수를 잘못  
써는 등 실수가 있어 김정의 신  
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만류하지 않  
고 유서를 대필한 것은 일종의  
상임인임으로 일컬어 치하야 하  
나 유서대필 경위·일시·장소 등이  
밝혀지지 않아 증명을 선고할 수

한민 연주회설친가족운동협의회

한민연



# 한겨레신문

## 불확실한 심증으로 “유죄” 흔들리는 사법부

### 강기훈씨 ‘실형선고’ 파문

김기훈씨 유서대필 혐의로 구  
속기소된 전민련 충무부장 강기  
훈(27)씨에게 20일 대법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자격정지 1년  
형의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  
건은, 지난 5월 1일 김기훈씨가 문  
신한 지 7개월만에

우لا마적인 일로 무죄임을 확인  
해온 민족운동가 미우고 있는 재판  
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판결에 재판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심증불명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 법률과  
변호인부의 증거를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처리되었던 것은 무책임한  
판결과 같다”고 말했다.

김기훈씨가 유죄를 선고했

는 것 수 없으나 나타난 증거로  
는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따른다.

전민련 전무비서장 서준식  
대법원 유서대필 혐의로 구

속기소된 전민련 충무부장 강기  
훈(27)씨에게 20일 대법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자격정지 1년  
형의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  
건은, 지난 5월 1일 김기훈씨가 문  
신한 지 7개월만에

‘의심갈땐 피고이익’ 상식 외면  
“운동권 밀기어렵다” 편견 노출

### ‘한국판 드레퓌스사건’으로 확대될 조짐

제200회 판결은 그 동안 재판부가 강  
씨의 대법원 항변에 대처해서 끊임  
없이 사건에서 법률과 변호인부의 증거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지를 내비쳤다.

김기훈씨는 “유서대필”을 인정한 이  
는 판결은 천세계 역사에 다시  
없을 웃음거리 판결”이라며 강씨  
의 무죄방법을 촉고했다.

‘의심갈땐 피고이익’ 상식 외면  
“운동권 밀기어렵다” 편견 노출

제200회 판결은 그 동안 재판부가 강  
씨의 대법원 항변에 대처해서 끊임  
없이 사건에서 법률과 변호인부의 증거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지를 내비쳤다.

김기훈씨는 “유서대필”을 인정한 이  
는 판결은 천세계 역사에 다시  
없을 웃음거리 판결”이라며 강씨  
의 무죄방법을 촉고했다.

‘의심갈땐 피고이익’ 상식 외면  
“운동권 밀기어렵다” 편견 노출

제200회 판결은 그 동안 재판부가 강  
씨의 대법원 항변에 대처해서 끊임  
없이 사건에서 법률과 변호인부의 증거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지를 내비쳤다.

김기훈씨는 “유서대필”을 인정한 이  
는 판결은 천세계 역사에 다시  
없을 웃음거리 판결”이라며 강씨  
의 무죄방법을 촉고했다.

‘의심갈땐 피고이익’ 상식 외면  
“운동권 밀기어렵다” 편견 노출

제200회 판결은 그 동안 재판부가 강  
씨의 대법원 항변에 대처해서 끊임  
없이 사건에서 법률과 변호인부의 증거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지를 내비쳤다.

김기훈씨는 “유서대필”을 인정한 이  
는 판결은 천세계 역사에 다시  
없을 웃음거리 판결”이라며 강씨  
의 무죄방법을 촉고했다.

‘의심갈땐 피고이익’ 상식 외면  
“운동권 밀기어렵다” 편견 노출

제200회 판결은 그 동안 재판부가 강  
씨의 대법원 항변에 대처해서 끊임  
없이 사건에서 법률과 변호인부의 증거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지를 내비쳤다.

김기훈씨는 “유서대필”을 인정한 이  
는 판결은 천세계 역사에 다시  
없을 웃음거리 판결”이라며 강씨  
의 무죄방법을 촉고했다.

‘의심갈땐 피고이익’ 상식 외면  
“운동권 밀기어렵다” 편견 노출

제200회 판결은 그 동안 재판부가 강  
씨의 대법원 항변에 대처해서 끊임  
없이 사건에서 법률과 변호인부의 증거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지를 내비쳤다.

## 신문

## 강기훈씨 선고공판정 이모저모

회정하다 알수없는 외미디

○...재판장인 노원욱 부장판

사는 이날 20분가량 진행된 선

고공판에서 판결요지를 낭독하

고 형량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식의 강기훈씨에게 눈길

한번 주지않고 시종 고개만 숙

인 체 무거운 표정.

법정에 들어

설 때부터 줄

꾼 침묵을 지

키던 강씨는

재판장이 판결

문에 냉혹한 끝에 유죄입장을 밝히

고 "징역3년 자격정지1년6

월을 선고한다"는 말이 미처 끝

나기 전에 그림을 알았다는듯

이 피고인식에서 벌떡 일어나

회정하기 위해 출구쪽으로 향했

다.

강씨는 그러나 몇 발짝 옮기

다 말고 "재판장"하고 회자며 되

풀이가 피고인석 대리를 두손으로

움켜잡으며 회정하려던 재판장

## 재판장, 강씨 외면한채 시종 무거운 표정-

## 방청객들 판결문낭독되자 유죄직감 '술렁'

검찰, 선고량에 불만

선고되더라도 할 수 있지만 유

서대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신

한다"면서도 "그러나 재판을 진

행해 온 재판부의 태도로 볼 때

불안한 마음을 갖을 수 없다"면

서 초조해 했다. 재판장이 판결

문을 읽어내려가면서 유죄가 확

실시되자 권씨는 "세상에" "말

도 안돼"라는 말을 되뇌이다가

선고뒤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3분여동안 자리에 앉아있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자살방조

에 대해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등이 명시되지 않아 공소사

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

기각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법

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적법하므로 공소장에 "일

자살방조 서울이상에서"

라고 기재했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들은 국과수의 감정이

검찰의 의도에 따라 감정한 것

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고 감정서에 필적감정과

납득할 수 있게 설명돼 있지 않

아 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형영 등

감정인들이 검찰의 의도대로 감

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한글 필

적감정의 최고 원워자로서 신뢰

할 수 있으며 필적감정이 세심

## 강기훈씨 판결문 요지

하고 신중한 판정을 거쳐 이루

어졌다며 보여지므로 변호인의

장소등이 명시되지 않아 공소사

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

기각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법

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적법하므로 공소장에 "일

자살방조 서울이상에서"

라고 기재했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들은 국과수의 감정이

검찰의 의도에 따라 감정한 것

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고 감정서에 필적감정과

납득할 수 있게 설명돼 있지 않

아 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형영 등

감정인들이 검찰의 의도대로 감

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한글 필

적감정의 최고 원워자로서 신뢰

할 수 있으며 필적감정이 세심

많은 부분 조작된 혼적이 있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나 피고인

이 써주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서준석, 이영비 등의 증언도 피

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이 필적은 유서의

필적과 같다는데 일본인 감

정인 오나시 요시오와 감정결과

를 제외하고는 다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홍성은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

홍성은은 김창조사시 1차진술에

서 자신의 수첩에 적은 김기설

이란 이름과 전화번호(유서와

필적이 같은)는 김기설이 직접

적었다고 진술했다가 2차진술시

는 피고인이 장난삼아 적어넣은

것이라고 번복했고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도 같은 내용의 증

언을 했다. 그러나 홍성은은 다

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그것을 선고한다.

형량이 징벌적 입장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받아들인 듯 "징역3년 선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신경 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 강씨 어머니 망연자실

○...이날 공판에는 강씨의 어머니 권태평(57)씨, 동생 기천(2

4·포항공대 박사과정)씨 등 가족들이 대부분 나와 방청했으나

아버지 강태일씨는 허리디스크

가 악화돼 법

정에 오지 못

했다고 가족들이 전했다.

재판시작 직전

전 어머니 권씨는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할 수 있지만 유

서대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신

한다"면서도 "그러나 재판을 진행해 온 재판부의 태도로 볼 때 불안한 마음을 갖을 수 있다"면서 초조해 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면서 유죄가 확실시되자 강씨는 "세상에" "말도 안 돼"라는 말을 되뇌이다가 선고뒤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3분여동안 자리에 앉아있었다.

【2】 1991년 12월 21일(토요일) 한겨레

(5판)

## 사설

## '구름잡는 공소장' 손들어준 재판

## 확증도 없이 '유서 주었다면 유죄'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가 어제 전국민족민주 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에게 내린 유죄선고는 '공정한 판결'과는 거리가 멀고 권리에 대한 굴복의 유서를 대필했다고 쓰지 않고

'유서를 주었다면'이라는 가정법에 기대고 있다. 판결이 가정법을 기초로 하면 안된다는 것은 법관의 기본상식이다.

판결문은 또 유서의 필적 감정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를 "한글 필적감정의 최고권위자"로 수배한 것이 이 재판의 발단이었다. 그로부터 일곱 달 동안 검찰은 강기훈씨를 자살설씨를 자살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김씨의 유서를 강씨가 대필한 '사설'을 제시했다. 20대의 한 청년간부가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유서까지 써주었다면 전민련이라는 단체는 도덕성을 저버린 집단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고, 재야운동의 전국 조직인 전민련은 그 주장에 반박하는 많은 자료들을 제시했다.

시비는 어차피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 노원욱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합의25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재판부는 이성과 양심에 따라 실제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법관의 임무를 포기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공소장의 구름잡는 듯한 '주장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정신을 저버렸다. 법관은 예 있으며, 재판은 무엇을 위해 하는가? 국가의 법질서를 어긴 사람들을 융정하는 사법적 목적으로 중요하지만 아흔아홉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피고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법관은 그래서 국가권력이 '법질서'라는 명분으로 저지를 수 있는 폭력과 인권유린에서 피고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합의25부의 판결문은 권투경기의 심판이 한 선수를 이기게 하려고 경기규칙을 깡그리 무시할 때 드러내는 자세 같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 "자살을 결심한 자에게 유서를 주었다면 정신적·무형적 방법에 의하여 자살하려는 자의 자살 수

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기각 결정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 판결문은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했다고 쓰지 않고 '유서를 주었다면'이라는 가정법에 기대고 있다. 판결이 가정법을 기초로 하면 안된다는 것은 법관의 기본상식이다.

판결문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재판부가 온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기설씨의 여자친구 홍성은씨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나 그 애인인 이모'로 변호인의 발단이었다. 그로부터 일곱 달 동안 검찰은 강기훈씨를 자살설씨를 자살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김기설씨가 대필한 '사설'을 제시했다. 20대의 한 청년간부가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유서까지 써주었다면 전민련이라는 단체는 도덕성을 저버린 집단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고, 재야운동의 전국 조직인 전민련은 그 주장에 반박하는 많은 자료들을 제시했다.

시비는 어차피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 노원욱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합의25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재판부는 이성과 양심에 따라 실제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법관의 임무를 포기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홍성은씨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오랜기간 수사기관의 '강제보호'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판결에 사활을 걸다시피한 검찰에서 강압적 조사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개연성을 배제하더라도 홍씨는 7차공판에서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수첩에 글씨를 넣지 않았음이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이보다 더 명백한 증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보도를 보면 재판부는 지난 5일 심리를 종결하고서도 "확실한 심증을 형성하지 못했다"면서 초조해했다고 한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는 커녕 심증도 굳히 못했으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이미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관의 의무를 포기한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이 판결은 '상식과 진실의 패배'라고 한 변호인단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25부가 땅에 떨어뜨린 법관의 신뢰를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기 바란다.

**國科搜 감정결과 증거로 인정**

**基動有罪신고 이모**

**3년선고**

**어느쪽도 결정적 증거 없어 고심**

**수첩조작 등 채택·자살방조도 無罪 범정이어 반발**

**변호인단의 심리면 廣義해석**

**서울地法 자살방조·保安法 적용**

**제13403號**

**9/12.21. 朝鮮**

**91. 12. 21. 土.**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방법원】 제13403號  
9/12.21. 朝鮮  
91. 12. 21. 土.

【大韓民國國科搜 감정결과 증거로 인정】  
【基動有罪신고 이모】  
【3년선고】  
【어느쪽도 결정적 증거 없어 고심】  
【수첩조작 등 채택·자살방조도 無罪 범정이어 반발】  
【변호인단의 심리면 廣義해석】  
【서울地法 자살방조·保安法 적용】  
【제13403號】  
【9/12.21. 朝鮮】  
【91. 12. 21. 土.】

의 증언조차도 묵살해버릴 것이다.  
재판관은 한사람도 아닌 세 사람이었다. 우

의 증언조차도 목살해버릴 것이다.  
제판관은 한 사람도 아닌 세 사람이었다. 우  
리는 물상식한 판결이 과연 제판관 세 사람  
임직된 회의이었는지를 회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합의로써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사  
례가 경향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서의 합의제판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회의

장기운은 절박해졌다. 나눠 모든 것을 걸고 이 단계에 대한 것은 명동상에서 친장을 상하는 「유서대필 글방」의 선봉에 섰다가 결국 창신사를 저지 되었다. 장기운이 착정으로 자살을 했던 무렵부터 「유서재판」은 끝난 무렵까지 성종에게 고의 죄를 되어 있었던 것과 그의 길백에 대한 일들은 그동안 잠시나마 그리고 이기화도 혼란인 듯한 흔적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월자와 오숙의 전통을 유지하고 고려를 사랑하는 우리 사립부의 세대에 주어 이번 이 몰상식한 관행은 충분히 예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이어지는 이 「이금지」는



서 준식

## 모든 것에 대한 절망이..

제2, 제3 강기훈 만들어 낼 사법부를 고발한다

념으로써 우리의 가슴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짓밟혀야 하는 우리의 이 상황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우리들의 현실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판부는 유서의 필적을 고집 했지만 일사의 필적을 문제하고도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그들은 충분히 모두 애써 외면하는 한편, 재판장에서 “강정 기준에 대한 납득력을 만한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앞을 강정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한 국인임을”(20)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강정과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수사장에서는 흥미로운 전시(전시)방식에서 올바라 그것을 문제해 볼 특별한 이유도) 거기까지 전화와 휴대폰으로부터 예상되는 일정난 비약을 강행했다. 터무니없는 개정이지만 빙그르니 허락해 주고는 그들이 사과해 준다. “이거야.” “네.”

강으로하고 국립극장에서 무대를 펼친 김정희와 함께  
았다고 가정해도, 그리고 흥분하는 순간에 진실이 진  
심이었다고 가정해도, 그것이 강기운이 유서를  
대신했던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  
기사 일련으로서 유서대신 뒤판의 결론을 도출  
하는 것은 어찌구나는 비단인 것이다. 「피싱스  
러운 때에는 때로인의 이외로 다른 형사재판부에  
직접마저 한친한 몸구나구나서 있는 기막힌 현  
상과 함께 있다.

관객은 오히려 다행이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시대의 소설의 시대적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한 번

단죄한 19세기 프랑스 재판부에 어우러진 반유대인 시사에 뿌리내린 바람이 있었던 것과 같은 원인에서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애증과 함께 친밀한 적의와 편견으로 뿐만 아니라 우정을 우리는 실감한다. 전국민적인 민족주의 운동(연합민족·전민족)은 민족위안으로서 고 김기환 혈사를 유일한 보통화등교로 삼아 그와 일화처럼 전민족의 모든 민족관련 사업을 열심히 추진시켰던 웅사자 그의 철학을 살펴보면 그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아진 민족으로서 세계에 대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있어 수 없이 경배해지면서 결국은 사법부를 비롯해 모든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것이 나온다. 끝난 일정으로 돌아와서는 꼴을 하고, 편자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재판부는 고 김기식 일파 본인이 되살아나 범정에서 전술을 듣는다. 대체 그 토론이란 '우리나라'라는 이운연은 그 일정과 재판부까지도 김철과 함께 거듭나게 하기 위한 충언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끗듯하게 간직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91. 12. 22. 일. 한겨레.

## 강기훈씨 담당 김창국 변호사

## 의뢰인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판정에 대한 느낌입니다. 다만 이번 재판이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 아닌 검찰과 공권력과 재야 운동권의 명예와 도덕성이 걸린 재판으로 비친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로서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파수 등을 통해 감정하기를 원했는데, 변호인쪽이 거부했다고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 이미 국과수는 이번 사건에 있어 검찰과 운명을 함께하게 됐다. 그런데도 재판부에서 국과수에 또 다시 감정을 맡긴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었다.

- 그러나 국과수가 아닌 사설 감정인은 어떠했는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한때 감정을 맡기기 위해 감정신청서까지 만든 적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정한 감정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했다.

-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자신은 있는지. 또 항소심의

## "재판부만 공정하다면 무죄 자신"

자료보충·많은 증인 신청해 항소하겠다  
우세한 싸움 판정패…국과수·검찰 한편

강기훈(27)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다음날인 21일 17명으로 구성된 강씨의 변호인단을 이끈 김창국(51) 변호사는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유죄를 예상했는지.

= 그동안 재판부의 재판 진행 태도로 불 때 직감했다. 그러나 이처럼 철저하게 검찰주장만 받아들여 줄은 몰랐다.

- 재판부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 재판부가 재야운동권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유서를 대신 써주고 이를 감추기 위해 서로 짜고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데 놀랐다.

-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 이번 사건의 검찰쪽 직접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뿐인데 이에 대한 우리쪽의 탄핵증거는 일본인 감정인 오니시 요시오의 감정서였다. 이에 따라 재판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과수와 일본인 감정인 사이의 명예와 권위가 걸린 싸움처럼 비쳤다. 재판부로서는 국과수가 공신력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현실여전과 함께 국가위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쪽의 감정서를 비교해 보라. 어느쪽이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감정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 변호인단이 제출한 필적자료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를 국

대책은.

= 재판부만 공정하다면 반드시 이기리라고 본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심리가 미진했던 부분을 다루기 위해 분신 당시의 정황과 관련해 증인들을 대거 신청하겠다. 당시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면 김씨의 유서가 분신 직전 쓰였으며 강씨가 대신 써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될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친 뒤 "이 말만은 꼭 해야 되겠다"면서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담당 검사들과 재판부도 내심으로 강씨가 유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열 기자〉

[10] 1991년 12월 28일(토요일)

## 한국기자신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 등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시는 원고엔 연락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보내실 때 우편번호 121-020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 6-25 판집국 어른매체부.

## 한겨레

## 유서사건 판결 상식벗어난 허구

## 피고이익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나는 이공계 출신이어서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법은 상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식을 벗어난 판결은 그 판결문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유례한 필치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여러번 경험했다.

유서대필 사건에서 생활이 되는 부분은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었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검찰은 유서대필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과 김기설씨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씨의 진술을 들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기설씨의 여러가지 필적과 사실기관의 필적감정, 서준석씨 등의 증인과 홍성은씨의 법정증언을 들고 있다.

먼저 가장 논란이 심했던 필적감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설사 변호인쪽에 호의적이지 않아더라도 유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 두 가지 사실이 모두 검찰 주장과 일치할 확률은 25%를 넘을 수 없다. 결

정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인의 의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은 당연히 무죄가 되리라는 것

은 그야말로 상식 아니겠는가?

단순히 수학적으로 따져서 검찰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50% 이상의 확실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홍성은씨의 증언이다. 과연 검찰 앞에서의 진술과 재판장에서의 증언 가운데 어떤 것이 진실이겠는가? 홍성은씨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보통 시민이라면 아마도 법정에서의 증언이 더 진실에 가까우리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검찰쪽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여기서도 50%의 확률을 부여해보자.

그렇다 하더라도 위 두 가지 사

실이 모두 검찰 주장과 일치할 확률은 25%를 넘을 수 없다. 결

정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인

의 의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판

결은 당연히 무죄가 되리라는 것

재판부는 검찰의 필적감정사 를 '한글 필적감정 최고의 권위 자로서 신뢰'하였고 피고인쪽 증언은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했으며, 홍성은씨의 법정 증언은 '의리상 거짓말을 한 것으로 믿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문 학적 상상력이 아니라 전전한 상식에 기초한 과학적 치밀성이 아 니겠는가.

윤권순 〈서울 관악구 봉천6동

장미원아파트 가동 209호〉

## 유서사건 판결 사법부 역할 포기

## 진실 밝혀지고 거짓 무를 끊을 것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강기훈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쪽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성남지사장 청년화가 보관하다가 제출한 방명록도 많은 부분 조작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또 서준석, 이영미씨의 증언 또한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했다. 한마디로 피고인쪽의 주장은 전혀 들어볼 가치도 없다는 식의 태도이다.

도대체 피고인과 판례가 전혀 없는 증인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이 있을 수 있는가? 재판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을 때 검찰쪽의 주장은 거의 그대로 수용한 테서 더욱 뜨렷하게 확인된다.

법령의 일시·장소도 명시하지 못한 공소내용을 전면 인정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법장에서 검찰쪽 주장을 부인한 홍성은씨의 증언을 무시한 채 홍씨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을 선택 인정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판사 자신이 법정에서 직접 묻고 들은 사실은 믿지 아니하고 비공개 장소인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무관한다는 것은 자기부정의 논리이다. 또 재판부







[1988.5.18 제3종 우편물(가) 금인가] 제1160호

### 검찰 국과수 수사가 남긴 문제점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직원의 거짓감정 의혹 사건 수사를 서울경찰에 맡겼다. 17일 밤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53)씨 구속을 마지막으로 김씨와 사설감정인 3명, 사건의뢰인 3명 등 모두 7명이 구속된 이번 사건 수사는 △국과수 직원이 사설감정인과 의뢰인들로부터 감정을 물리싸고 뇌물을 받았다 △그러나 국과수 직원의 거짓감정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신에서 풀처럼 전진을 보지 못한 채 막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기는커녕, 자칫하면 검찰의 공신력까지 떨어뜨릴 공산마저 커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차원의 뇌물을 비리로 규정해 국과수 문서감정의 구조적 비리를 드러내려는 거짓감정 여부를 밝혀내는 '데카지는 접근

### '거짓 감정' 못밝히고 마무리 급급

#### 뇌물비리로 규정...공신력 실추 우려 문서분석실 직원 관련조사 호지부지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과수 문서분석실의 김정철(51)과 문석수(44)와 함께 소송·감정결과의 대결 과학수사 운영과에서의 재감정 문제로 사건 소송서류의 정밀분석 등으로 실시했으나 대결 과학수사운영과의 감정결과가 김씨의 감정값으로 돈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위감정을 받은 대가로는 부정감정을 대가로 받은 과학적 뇌물건을 말하니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다.

검찰은 그간 의뢰인 이세웅(41)씨 관련 3건, 양승호(44·간죽임)씨 관련 1건, 이귀덕(여·수배증)씨 관련 1건 등 모두 5건의 사건기록부에 대한 정밀 검토 결과 이세웅씨 관련 증사 3건은 이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감정 결과가 나왔으나, 나머지 2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는 점을 들어 뇌물이 관 허위감정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현재 밝혀진 뇌물 액수가 수십만~수백만 원으로, 일반적인 뇌물거래를 감안해볼 때 감정인이 직업적 생명을 걸고 허위감정을 해준 뒤 받은 대가치고는 너무 소액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실제로 김씨가 순수한 '먹값'으로 돈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위감정을 받은 대가로는 부정감정을 대가로 받은 과학적 뇌물건을 말하니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다.

따라서 감정과 관련, 뇌물을 받았을 경우 내부적으로 뇌물을 지불하거나 또는 '부정감정'을 의뢰받은 사건을 서로 확인해줄 수 있는 개인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또 김활이 김씨 외에 다른 국과수 직원 3명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해 비리 관련부분을 조사했으나 이들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은 1명에 그쳤을뿐 아니라 이 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아 명식적인 수사 마무리 절차를 위한 과정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국과수 문서분석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문서의 감정의뢰를 받으면 주일 감정원을 선정해 감정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서면합의'도록 돼있다.

〈이길우 기자〉

거준다. 더 큰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큰 불의를 막기 위해서. 우리의 경우처럼 정보제공자의 면소제도가 없는 일본에서마저 저 록히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자 미국의 제도를 원용했던 전례를 떠올려보는 것은 더더구나 민망한 일이다.

다시 오든은 법을 노래한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법은 우리의 운명 /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법은 우리의 국가"라고, 가랑잎으로 눈을 가리는 저 검찰의 솜씨도 과연 우리의 운명인가, 과연 우리의 국가인가.

암담하고 또 암담하다. 한낮에 등불을 밝히고 다녀도, 나의 순진한 감회에 동조해주는 이웃은 없다. 저 중인의 구속을 보라는 호통 속에서 몸매만 엉어맞을 뿐이다. 그리고 "오늘도 짓밟히는 저 김기설씨의 죽음을 보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벌어낸 감정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저 강기훈씨의 고난을 보라!"는 함성이 온몸을 강타한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역시 순진도 유죄이다. 이 땅의 오늘을 돌아다보라. 한 폭력배의 두목을 경찰의 간부가 엄호한다. 도주를 지령한다. 국가 안전기획부의 종사원이 한 폭력배 두목의 안전을 지켜준다. 통관을 밀어준다. 국토방위의 신성을 자랑하는 군의 장교가 한 폭력배 두목을 문

### 한국판 논단

#### 김 중 배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돈을 받았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은 체 돈을 주었다. 그 누계가 1천몇십만원. 그러나 거짓감정 따위의 검은 그림자는 전혀 끼어들지 않았다. 참으로 순수한 사람이다. 인정이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것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순수한 거래'에 단죄의 칼날을 뽑아둔다.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그 단죄의 칼날이 인륜을 자르는 반인륜의 비수로까지 비쳐진다. 우리의 검찰은 "법은 사랑처럼 / 어디에 왜 있는지 모르는 것 / 사랑처럼 얹기로는 못하고

### 법은 죽어버렸다!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라는 W.H. 오든의 시를 모르는 것인가?

이상이 검찰이 말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실장 구속의 맥락이며, 또한 그의 구속에 불여겼던 나의 순진한 감회이다. 정작 아무런 '조건'과 '보상'의 거래가 없었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후원금'쯤으로나 자리매김될 인정의 교류를, 굳이 단죄해야만 하는가. 설령 법의 칼날을 뽑아들더라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정도가 알맞은 것은 아니었던가. 혹시 '중여죄'라는 게 있다면 그쯤으로 다스리는 편이 좀더 온당했을 법도 하다.

그 모두가 '이 땅의 법을 지킨다'는 한무리의 작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여전히 우리의 운명이며, 우리의 국가인가. 그렇다! 오늘의 권력을 '나누어내지 못하는 한, 이 참담한 심경이 우리의 운명이며 우리의 국가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배세력이 그렇게도 '보수하고자 하는 현실의 가치이다.'

그들에게 거짓감정을 밝혀내라고 짓대를 울려본들 부질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속죄와는 무관한 무리이다. 그들에게 안기부와 군, 경찰과 교도관의 불법을 단죄하라고 짓대를 울려본들 핫되고 또한 핫된 것일 뿐이다.

때문에 오든은 다시 법을 노래한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 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 법은 죽어버렸다"고. 그렇다. 허위감정의 하늘 아래 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법은 죽어버렸다!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법을 사랑처럼, 우리의 운명으로 되살려내지 않아도 옳은가. 법을 사랑처럼, 우리의 국가로 회생시키지 않고도, 우리의 삶은 사랑일 수 있는가. 〈언론인〉



## 국과수 '거짓감정' 재수사 촉구 재야 12개단체 '강기훈석방 대책위' 결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OC), 인권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등 12개 재야·종교단체 대표들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리스토랑에서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함세웅 신부) 결성식을 갖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거짓감정 의혹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유서대필 시기는 물론 장소·경위도 밝히지 못한 채 강기훈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비난하고 “이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고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제풀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냥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국과수 의혹사건의 축소·은폐에 급급하고 있는 검찰이 또 다른 감정비리 혐의를 미리 막으려는 의도로 감정비리 혐의를 조망길씨에게 구속했다”고 주장하고 조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김형영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을 거짓감정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기훈씨 무죄석방운동 본격화 공동대책위 결성, 공정한 재판 촉구

‘유서대필’ 공방의 당사자인 강기훈씨에 대한 무죄석방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인권위, 대한상공회총회와 실천사제단, 민주화실천기독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인권위, 단국대학교총학생회, 서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등 9개 단체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리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서사건 강기훈씨의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위원장 함세웅 신부)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세웅 신부는 결성선언문을 통해, “허위감정비리의 주범인 김형영(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이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다고 감정한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의해 강씨의 결백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강씨에 대한 자

료집 발간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후원회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21일 검찰이 국과수 거짓감정을 언론에 제보한 조병길씨를 사기미수와 무고죄로 구속한 것과 관련, ‘보복적인 수사’라고 비난했다.

이석태 변호사(민변)는 이에 대해 “미국·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건의 제보자가 설사 다른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굳이 과거 일까지 문제삼아 구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실제로 국과수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 국과수가 조직을 개편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 사건의 폭로가 가져다 준 파장이 적지 않은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서 “축소·은폐로 마무리된 국과수 감정비리 사건은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뢰성 잃은 감정·증거 안돼. 변호인

법률부는 김씨의 변호인으로 유서를 대변한 형외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민현 충무부장 강기훈(28)씨에 대한 학소심 첫 공판이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과 변호인쪽의 피고인 직접신문과 증인신청이 진행됐다.

## 김형영씨 증인 채택 23일 국과수 기록검증 하기로

강기훈씨 항소심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형외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민현 충무부장 강기훈(28)씨에 대한 학소심 첫 공판이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과 변호인쪽의 피고인 직접신문과 증인신청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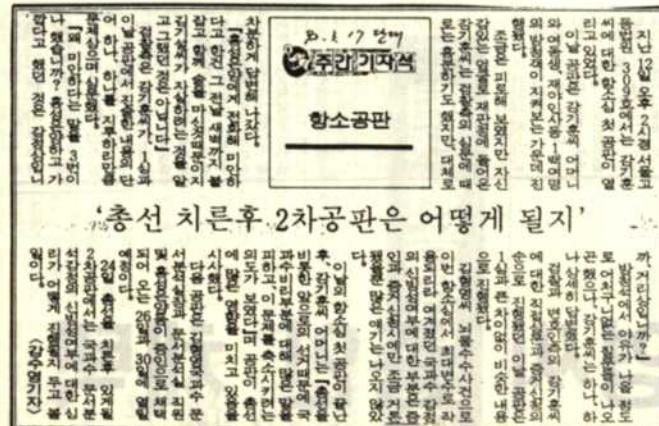
이에 앞서 변호인쪽은 항소심 증인으로 김씨와 국과수 문서분석실 직원 양후열씨, 홍성은씨 등 김기설씨 친구 5명, 그리고 국과수 직원과 사설 간접인과의 비리를 언론에 제보했던 조병길(47·구속증)씨 등 8명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쪽은 또 △유서대필사건 관련 필적감정의뢰서 접수 및 발송일자 △이 사건 필적감정자료 △김형영씨 등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형사기록 △이철원씨 등에 대한 변호인 위반사건 형사기록 등의 기록검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홍성은씨는 피해자 일정이고 1심에서 충무회 증언했으며 조병길씨는 유서대필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으나 김형영 씨 등 나머지 증인의 채택에는 동의했다.

김형영은 기록검증에서는 이창열씨 관련 형사기록은 관련문서의 감정을 대침 과학수사운영과에서 주로 실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다음 공판은 26일 오후 2시.



3. 17 월  
2주기 입법회에서 제기된  
제2차 공판은 어떤 방향으로  
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변호인과 김기현은 재판부에 대  
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며 재판부  
가 핵심의 일부로 보고자 하는  
한국의 철학을 강조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김기현의 저작권 침  
해를 이유로 재판부에 대한 저  
항의 목소리를 표명한 바 있다.  
3. 17 일  
[기획] 3. 17 일  
한국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부에 저항하는 저작자  
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부에  
제기된 제2차 공판은 어떤 방향으로  
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변호인과 김기현은 재판부에 대  
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며 재판부  
가 핵심의 일부로 보고자 하는  
한국의 철학을 강조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김기현의 저작권 침  
해를 이유로 재판부에 대한 저  
항의 목소리를 표명한 바 있다.

## 강기훈씨 항소심 공판 국과수 뇌물 사건 증거 채택

2주기 입법회에서 제기된  
제2차 공판은 어떤 방향으로  
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변호인과 김기현은 재판부에 대  
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며 재판부  
가 핵심의 일부로 보고자 하는  
한국의 철학을 강조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김기현의 저작권 침  
해를 이유로 재판부에 대한 저  
항의 목소리를 표명한 바 있다.

## '총선 치른 후 2차공판은 어떻게 될지'

총선 치른 후 2차공판은 어떻게 될지  
총선 치른 후 2차공판은 어떤 방향으로  
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변호인과 김기현은 재판부에 대  
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며 재판부  
가 핵심의 일부로 보고자 하는  
한국의 철학을 강조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김기현의 저작권 침  
해를 이유로 재판부에 대한 저  
항의 목소리를 표명한 바 있다.

## 팔복동산 대표

3. 17 일  
그렇다면 지구는 둘지 않는다(?)

그레도 지구는 둔다. 종교재판에서 지동설을 확  
회하고 나오며 갈릴레오가 단  
정 유명한 말이다. 비록 법정  
에서는 권력의 힘에 놀려 진  
실을 말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갈릴레오.

지난 12일(목) 열렸던 항소  
심에서 김기현씨의 유서를 대  
체해준 적이 있던 김기현은

이후 항소심에서 김기현은  
여전히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  
는 것으로 드러나며 항소심이  
개최될 때마다 김기현은 그를

우리는 지난 5월 강경대군  
치사사건이후 타율었던 부정  
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었던  
[김기현씨 유서 대필사건]을 기억한다. 정원은 이 사건을

악용하여 정권의 부도덕성에  
자신의 봄을 내려져 분노했던  
열사들은 [문동권의 조직적 분  
신계획의 당첨자들]로 예도하  
는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국민  
들을 우롱하고 그들의 명예를 유지했던 것이다.

2. 17 일  
그렇다면 지구는 둘지 않는다(?)

3. 17 일  
그렇다면 지구는 둘지 않는다(?)

## "유서감정 근거자료 없어"

김씨변호인 기록검증

김기현씨 유서 대필 험의로 구

속기소원 전민현 청무부장 장기<sup>호</sup>(28세)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  
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우정)는 27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  
분석실을 방문해 2시간 동안 국  
과수의 이 사건 필적감정에 대한  
기록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김종진씨는 "이 사건 필적감정  
을 담당한 이 연구소 문서분석실  
장 김형영(53·구속)씨는 나와 함께  
서 증인으로 나와 분신사살한 김  
씨의 유서필적과 강씨의 필적이  
70% 이상 같아 통일필적이라는  
감정을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이  
에 관한 구체적 근거자료는 없음  
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제관부는 그러나 두 필적이 70  
% 이상 같다는 내용의 풍자서를  
제작부에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제관부는 다음달 2일 열릴  
4차공판에서 흥비를 다시 살피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  
시에 열려 천 국립과학수사연구  
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53·구속)  
씨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측은 이에 따라 오는 30  
일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예정된  
김형영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객관적 기  
준에 따르지 않은 주관적 감정이  
있다는 점을 짚증 추가하기로 했  
다. 3. 27 일 최기현

## 강기훈씨 변호인 증인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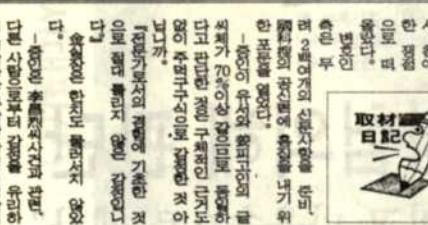
3. 17 일  
항소심 2차 공판 '김씨 필적 틀림없다' 진술

분신자살한 김기현씨의 유서를  
대필한 험의로 1심에서 징역3년  
을 선고받은 전민현 청무부장 강  
기훈(28세)씨에 대한 항소심 2차공  
판이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  
판장 임대화 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려기 때문에 증인으로 다시 나  
오지 않겠다는 내용의 풍자서를

제작부에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제작부는 다음달 2일 열릴  
4차공판에서 흥비를 다시 살피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  
시에 열려 천 국립과학수사연구  
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53·구속)  
씨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측은 이에 따라 오는 30  
일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예정된  
김형영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객관적 기  
준에 따르지 않은 주관적 감정이  
있다는 점을 짚증 추가하기로 했  
다. 3. 27 일 최기현



## 뇌물 받은 鑉定人의 증인신문

3. 31 일  
南韓報 사회 1부기자

3. 31 일  
그림자로 사살되었던 김기현은  
제2차 항소심에서 유서를 대필한  
한국철학회 강기훈은 증인으로  
언제나 재판에 참석해 왔던 것  
이다. 그는 김기현이 증인으로  
증명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그를  
제외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3. 31 일  
그림자로 사살되었던 김기현은  
제2차 항소심에서 유서를 대필한  
한국철학회 강기훈은 증인으로  
언제나 재판에 참석해 왔던 것  
이다. 그는 김기현이 증인으로  
증명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그를  
제외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3. 31 일  
그림자로 사살되었던 김기현은  
제2차 항소심에서 유서를 대필한  
한국철학회 강기훈은 증인으로  
언제나 재판에 참석해 왔던 것  
이다. 그는 김기현이 증인으로  
증명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그를  
제외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3. 31 일  
그림자로 사살되었던 김기현은  
제2차 항소심에서 유서를 대필한  
한국철학회 강기훈은 증인으로  
언제나 재판에 참석해 왔던 것  
이다. 그는 김기현이 증인으로  
증명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그를  
제외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3. 31 일  
그림자로 사살되었던 김기현은  
제2차 항소심에서 유서를 대필한  
한국철학회 강기훈은 증인으로  
언제나 재판에 참석해 왔던 것  
이다. 그는 김기현이 증인으로  
증명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그를  
제외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3. 31 일  
그림자로 사살되었던 김기현은  
제2차 항소심에서 유서를 대필한  
한국철학회 강기훈은 증인으로  
언제나 재판에 참석해 왔던 것  
이다. 그는 김기현이 증인으로  
증명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그를  
제외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3. 31 일  
그림자로 사살되었던 김기현은  
제2차 항소심에서 유서를 대필한  
한국철학회 강기훈은 증인으로  
언제나 재판에 참석해 왔던 것  
이다. 그는 김기현이 증인으로  
증명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그를  
제외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가 김기훈씨 할  
소설 3차 공판이 열린 30일 오후 변호인과 증인으로 출두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 “유서감정 경험의 해 판단 강씨필적과 특징비교 마음속으로 계산”

국과수 김형영씨 진술

분신자살한 김기설씨 유서대필 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민련 충무부장 강기훈(28)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53·구속증)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형영씨는 변호인신문에서 “두가지 이상 필적의 동일 여부를 판정할 때 필법의 유사비율이 70% 이상이면 동일필적, 45% 이하이면 다른 필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

이라면서 “그러나 유서대필사건에서 유서와 강기훈씨 필적이 몇 % 이상 유사한지 구체적 수치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서와 강씨 필적에 대한 감정에서 전체 대조특징과 동일특징의 수, 그 비율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면서 “동일 여부 판단은 감정인의 오랜 경험과 능력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며 정확한 수치계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어 특징을 비교할 때 동일특징비율은 감정 때 마음 속에 수치가 계산되는 것이지 모든 특징이 비교돼 동일비율이 계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변호인단

이 “김기설씨의 필적”이라며 제출한 15종의 필적자료에 대해 유서필적 등과의 동일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과수 등 공적 감정기관에 필적감정을 의뢰할 것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변호인쪽의 반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국과수 허위감정의혹 사건으로 국과수의 공정한 감정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국내에 다른 신뢰할 만한 감정기관이 없다”며 검찰의 필적감정신청을 반대했다.

다음 공판은 4월2일 오후 2시에 열려 김씨의 여자친구 홍성은(25)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어머님,  
『유서대필』이라는 거짓말에  
감옥에 있는 아들, 강기훈  
씨를 생각하며 눈물로 범을 치  
세우실 어머님, 구缺失는 마음으로  
쓰고자 했던 한글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침내는 저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갑질이며, 무죄를 무너뜨렸습니다.  
인간에 대해 그토록 무식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  
고서는 단 한 줄의 글도 쓸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증인신문』과 10년 전 소망에  
이루어진 5월을  
표현할 수 있게 궁금합니다.  
정대, 승복, 영광, 새옹... 그  
수기다.』는 민기원 어머님의  
질구는 차라리 뉴욕간 이의 폭  
세인이었습니다.『시원 사는  
세상이 좋아하...』를 부르면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그래서 이  
방 모든 어머님들께 드리는 다짐  
그러나 어머님,

그리고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는 데 목  
으로 강기훈 씨에게 유죄를 선  
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어느 깊어에서『모  
든 것이 한계인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지난  
여기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기고는 한없이 누그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조국의 오늘은 대단히 숨  
풀과 분노를 금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에 10년 전에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은 철저  
회피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  
인민의 책임자인 저자기 어버이처럼 스  
스로 죽일 수 있었기에 공산주  
의 초기의 공산파들은 김수재  
(金秀在)씨의 어버이처럼 대신  
죽여주는『시원』을 만들고...  
결국 목숨을 끌어가는 저인의  
아버지도 죽일 수 있는 것이



## 어둠의 배후세력...유서대필(?)

지도 다짐으로만 남아 있습니  
다. 김기설 열사는 그 유서에  
서『어머이란, 꿈 대신의 기술  
에 카이로피아인 꿈 대신 피부』라  
는 문장에 여겼다.

나의 공산주의자다.  
강기훈 씨를 조작했던 검사  
인원에 지역 한인으로 단장을  
하는 위와 같은 말을 했다. 하지  
만 그 검사가『불제한 반공구  
의자였던 어머니『나는 공산주  
의자인가, 한인을 결심한 동  
네들이 무리를 즐거워하는 것  
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를  
여기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립과  
수도에 유서를 대신 써줄 수

있다는 억지로 한 인간을  
인원에 지역 한인으로 단장을  
하는 위와 같은 말을 했다. 하지  
만 그 검사가『불제한 반공구  
의자였던 어머니『나는 공산주  
의자인가, 한인을 결심한 동  
네들이 무리를 즐거워하는 것  
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를  
여기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립과  
수도에 유서를 대신 써줄 수

# 『4』 1992년 4월 2일(목요일)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어머님에게 보내는 편지 제 27-28-29-30

국가의 이익안이 빛을 발하는  
오늘입니다.

강기훈 씨의 필적을 척결 강  
정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 김형영 실장이『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성장  
사를 받았는데 무작 때에  
예반을 치는 모르고, 거짓말  
하는 점에 상관없다』는 저자가  
는 이도 옳을 정도의 축소  
하자 수사로 사건을 축소  
질시켜 버렸지만 어머님 우리  
는입니다.

이미『국립』과『과학』의 이  
들은 우리를 조작용지에 한다  
는 것을 알게 됐어진 이 국가가  
지 이를 살피고자 하면 한  
특정 인은 더욱 반인간적인 품  
질을 드러낼 것이다.

『공국의 솔리에 대해 철망하  
지 않음』『강기훈 씨의 솔리를  
밀습니다.』『제나하던 강기훈 씨  
의 이름을 찾을 수 없을 때에  
한 이 광 모는 어머님의 기술  
에서 피물을 뿐이라는 사실은 알  
것이고, 인간을 뿐이라는  
것은 비인간적인 논리를 부  
수고 전쟁 사람사는 세상을 알  
당기는 시학일 것이다. 백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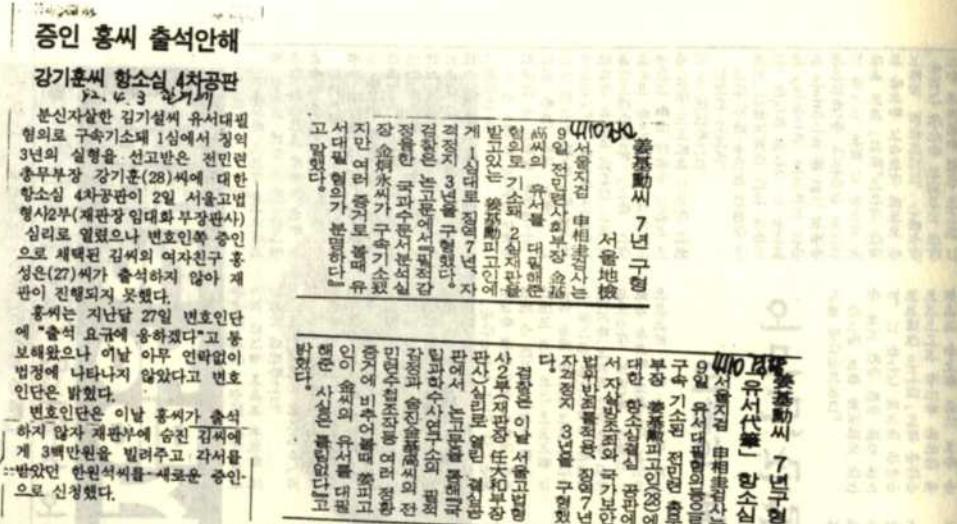
겁기훈 씨를 만난 어머니 백일

남에서도 조금이나마 일어

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에서 해롭는

것을 저를 위해 어머  
님, 백일을 이 광수(국문)



9. 6. 16 토

## 강기훈씨 항소심 선고 전망

유서대필의 구속기소된 강기훈(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심 때와 마찬 가지로 이 사건 필적검정을 할 은 전 국파수 문서분석실장 김영(53·구속증)씨의 감정을 배척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창은, 그러나 김 실장이 뇌물을 받고 감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숨진 김기설씨의 유서필적 감정만은 공정하고 정확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뇌물

거가 나타나지 않아 유일한 직

직증인인 필적감정 결과의 세

입장에서 항소심에 입해왔다.

변호인단은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 뇌물감정 말고도 국파수 필적감정의 중요한 결함이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씨가 국파수의 필적감정은 경험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지 비교대상인 두 글씨의 동일 특성에 대한 정확한 수치계산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진술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1심에서 김씨가 "필적의 동일여부를 판정할 때 '필법의 유사비율이 70% 이상이면 동일'

## 유일한 증거 '필적감정' 판단 관심

## 김 실장 진술 엇갈려 재판부 고민

백여부에 유·무죄가 결정될 것 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김씨의 뇌물감정사실과 이 사건 감정 결과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입장을 갖는 것을 감지하고 한숨 끊었다는 분위기이다.

우선 유서의 필적과 김씨의 글씨가 동일하다고 감정한 김영 양씨가 지난 2월 문서감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됨으로써 필적감정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해버렸다. 그 이후로 유서를 대신 써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0일 오후 2시.

실제로 김창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김씨의 뇌물감정사실과 이 사건 감정 결과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입장을 갖는 것을 감지하고 한숨 끊었다는 분위기이다.

김씨의 이런 진술은 국파수 감정의 과학성에 흥미를 내고 이 기관의 필적감정이 주관적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설득력을 불어 넣어 주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에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일 기자)

8일 오전 11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국파수) '뇌물감정' 사건 재판에 열린 서울 형사지법 321호 법정.

포승에 끝여 법정에 들어온 전 국파수 문서분석실장 김영(53·씨)씨는 좁은 '법정을 벗어난' 예운·방청객들을 잡시 훑어본 뒤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문서 감정인으로 수 침차례에 걸쳐 증인석에 앉았던 김씨로서는 지난 80년 허위감정죄로 구속된 이후 12년 만에 다시 피고인석에 서게 된 것이다.

이어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건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세용(41)씨와 사설감정인 등 5명이 나머지 피고인석을 차지했다.

처음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주인공'인 김씨에 대한 신문 내용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날카로운 주장을 예상하며 모든 눈길을 검사에게 맞추는 순간, 검

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김사의 신문에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앞좌석에서 조차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속은 목소리로 "예"

라고 대답했다.

동네방네 4월 9일자

## 고개딸군 '국파수 허위감정'

사는 김씨에 대한 신문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다. 이 정도로 김씨의 공소 사실 일정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 듯 싶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활발한 검찰의 직접 신문이 끝난 뒤, 김씨는 자신감을 얻은 듯 변호인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당당하다는 듯

김이 블로그의 또렷한 목소리

로 주장은 펴나

"비록 돈을 받았지만 15

년간의 국파수 재직중 국내문서

감정의 1인자로서 양심에 거리

끼는 감정을 한 적은 단 한차례

도 없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이런 법정진술 내용은 구속 직전인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맹세한 대 감정의뢰인이나 사설감정인으로부터 단 한분의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었다. (이재일 기자)

[2] 1992년 4월 11일(토요일)

[4판] 학계

## 사설

### 강기훈씨는 당연히 무죄이다

#### 국과수 감정인의 '횡설수설'이 반증

'유서 대필'이라는 혐의를 쓰고 있는 전민련 사회부장 강기훈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되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감정과 김기설씨의 수첩 조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강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신상규 검사는 항소심에서 강기훈씨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1심에서 재판부가 '유서 대필'의 유일한 증거로 받아들인 필적감정의 장본인인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가 1천만여원의 뇌물을 받은 형사피의자로 증언대에 섰는데도 검사의 논교에는 변화가 없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강씨는 당연히 무죄이다. 1심부터 드러난 여러 사실들이 무죄를 입증한다. 변호인단이 1심 변론에서 주장했듯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형소법 제328조)에 해당되므로 공소기각이 되거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54조)는 규정에 어긋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났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1심 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공소장에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물상지에서'라고 기재했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의 판결문에는 이런 구절도 들어 있었다. "김형영 등 감정인들이 검찰의 의도대로 감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한글 필적감정의 최고 권위자로서 신뢰할 수 있으며, 필적감정이 세심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김형영씨가 검찰의 의도대로 감정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증거도 없었

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글 필적감정의 최고 권위자"이며 "필적감정을 세심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 했다는 김씨가 그런 인물이 아님이 1심 뒤에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강기훈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은 지 두달 뒤인 지난 2월18일 김형영씨는 89년부터 5건의 감정과 관련해서 의뢰인들로부터 1천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을 받은 값치름으로 수많은 거짓감정을 했음이 분명하다는 여론을 외면하고 수뢰만으로 그를 구속했다. 검찰이 거짓감정의 사례들을 밝혀냈다면, 강기훈씨는 당연히 공소가 취소되어 석방되었을 것이다.

김형영씨가 "세심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 김기설씨의 유서를 감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항소심 재판장에서 그의 입을 통해 입증되었다. 그는 1심 때 검찰쪽 증인으로 나와서 "필법의 유사 비율이 70% 이상이면 동일 필적, 45% 이하이면 다른 필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는데, 2심에서도 그 말을 되풀이한 뒤 "유서대필 사건에서 유서와 강기훈씨 필적이 몇% 이상 유사한지 구체적 수치자료는 없다"고 '고백'했다. 그는 '감정인의 오랜 경험과 능력에 따라' 유서 대필 판정을 내렸다는 비과학적 주장은 서슴지 않았다. 이보다 명확한 무죄의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강기훈씨에 대한 또 하나의 공소사실인 '이적 단체 가입'에 관해서는 변호인단이 1심에서 "혁노맹 중앙위원회의 의견 차이로 강씨를 정식 조직원으로 기입시키지 않았음"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해 봄을 달구던 '강경대씨 타살 정국'이 어느덧 한해를 맞는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가 3·24 총선에서 민자당을 참패시켜 정치의 앞날이 밝아진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강기훈씨에게 단호히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 신문

[1988.6.18제3종우편물(가)급인가]

제1208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공개하여 보도된 '법원·부조리' 문제는 그 핵심을 벗어나 일종의 감정싸움으로 번질되어 버린 듯 하다.

법원쪽은 변협이 대중 언론에 공개부터 한 방법론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 구체적 증거의 제시를 요구하는 한편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해명해야 한다고 나섰고, 변협은 공보이사를 면직시키는 등 법원쪽에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변협의 공개가 공식이 된 대법관 자리를 놓고 재야의 지분을 차지하고자 하는 밤그림자 쌍용으로 보려는 시각의 보도도 나오는 형편에서였다.

#### '법원 부조리' 발표의 의미

변협이 전국 2천2백여명의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에着手한 것은 지난해 8월초였고, 그 계기는 강경대씨 치사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나타난 '법정소란' 때문이었다. 변협은 설문조사에서 변호사들이 법관, 검사, 당사자를

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여부와 재판운영에 관해서 시급히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2백88명의 응답 변호사들 가운데 53.5%가 법관으로부터 모욕, 주대접, 편찬, 심지어는 소송기록을 접어던지거나 변호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73%의 응답자는 법관이 재판 특히 보석, 구속적부심, 집행유예 등 형사재판에서 변호사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사례를 기술하여 변협의 설문조사과 정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취합해 정리한 자료가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른 것인데 '현직 판·검사가 개임 1년 안에 10억원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지극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된 것은, 언론매체 특유의 선정적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감정대립으로 비화

이 보도 이후 변협과 법원이 서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설문조사가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변협의 설문조사의 의미와 가치는 변호사들이 법관이나 검사들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사례를 종합한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사법·검찰의 독립과 민주화, 재판의 공정성의 확보, 법조계 전체의 정화라는 커다란 과제를 향한 변호사들의 열망 확인인 것이다.

내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임원일 때인 89년 7월, 서울회는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6공화국 사법부의 독립 및 사법운영에 관한 설문조사'와 같은해 7월 '제6공화국 검찰의 위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는 우리 사회가 아직 민주화의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았을 때였고, 그래서 서울회는 소속 변호사들의 눈에 비친 6공의 사법부와 검찰이 5공의 그것과 비교하여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검증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그 조사에서도 6공의 사법부와 검찰이 과거와 멀리 달라졌는지가 묻고, 그 결과는 그 신뢰를 얻는 유일한 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이 수사와 재판에 간여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변호사들의 눈에는 그 공정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믿을 수도, 승복할 수도 없다는 것이 설문조사가 제기한 핵심이 아닐 수 없다.

#### 핵심은 신뢰의 상실

그렇다면 법조계는 문제의 핵심을 뺏어 낸 공허한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도 성실히 폐를 깎는 자기반성을 실행하고, 재판과 수사의 공정을 굳게 세워 국민의 신뢰를 다시 모을 제도의 개혁과 주변정화를 시작하여야 마땅 할것이 아닌가? 우선 법원은 재판의 공정을

의실받을 수 있는 소지를 탐색하여 하나 하나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구체적으로는 공정한 법관인사, 법관에 대한 재교육, 청우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최근 몇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중견법관의 대거 이직 사태는 인사에 대한 불안도 적지 않겠지만, 열악한 처우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법관에게 언제까지 배고픈 성직자일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사문화된 법관 정계제도도 파악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개혁과 정화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최근의 한액회사건이나 안기부 선거개입 사건의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는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철저한 과정이고 동시에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실례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들도 자성하고 정화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친 수임경쟁과 보수의 고액화, 사건해결을 위한 무리한 시도 등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며, 이 모두가 변호사들의 자기정화를 촉구하는 대목들이다.

아무튼 변협의 '부조리' 공개사건이 그 방법론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의 자성과 정화 그리고 개혁의 계기가 되고, 왜 한국의 현정사에서 사법권의 독립, 검찰의 중립은 물임없이 당위의 과제로 제출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사회가 한 번도 진정한 의미에서 그 독립과 정화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반증에 다름이 아니다.

&lt;변호사&gt;



한겨레신문

# “강기훈” 4백인 선언

각계인사·서명 공정재판·석방요구

박형규 목사, 김환국, 양세대  
부총장 등 10명은 16일 오전 8시  
3분 서울 종로구 연세동 기독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  
계·차·체·법조계 등 각계인사 4  
명이 4백인 선언을 통해 “유서사건  
을 위한 4백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을 통해 “유서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련하고 부실한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으며 과학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법률과학연구소의 강성철장을 유

죄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 유서사  
건에 대한 청소년대지도 협  
회장회 공개 풍자 글을 요구했다.

이날 강씨의 유죄를 인정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각계인

사 229명은 이 사건의 규탄한 제

권인 행동을 표명하는 서명을 남겼다.

제판부인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장 일대화부장판사)에 제출했다.



16일 오전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독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집이 은퇴한 김기수씨의 품격  
와 공정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4] 1992년 4월 17일(금요일) (4판)



16일 오전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결집이 은퇴한 김기수씨의 품격  
와 공정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서사건’ 강기훈씨 당연히 무죄 수뢰 구속자의 감정결과까지 증거채택

“강기훈 징역7년 자격정지3년  
강피고인의 반국가적 반체제적  
성향으로 볼 때 강피고인은 동료  
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이  
용할 사람.”

얼마 전까지 시국사법으로, 안  
양교도소 특별사동(정벌사동)에  
서 강기훈씨와 같이 생활하다 출  
소한 사람이다. 누우면 머리와  
다리가 끌과 끌에 닿는 그리고

냄새가 온 방에 진동하는 재래식  
화장실이 코앞에 있는 영화〈파  
빠용〉에서나 볼 수 있는 수용시  
설이었다. 거기에서도 누구보다  
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행여 접  
견들이라도 들어올라치면 글 한  
조각이라도 혼자먹기 아까워 수  
김제소자들과 나누어 먹던 그였  
다. 추운 겨울 난방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독방에서 온기를 발하

는 것은 오직 우리들의 몫뿐이다.  
먹는 것도 부실하여 건강을 유  
지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것저  
것 모아 쪘개를 물여먹는데 항상  
췌개를 물여 나누어 주던 모습,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겨울 단  
식중에도 자신의 힘든 몸은 아랑  
곳없이 눈뜨기 바쁘게 시찰구 가  
득 웃음을 머금고 동료의 건강을  
걱정하면 그가 동료의 생명까지  
혁명의 도구화한다는 선전은 참  
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을, 그리고 설을 혁  
명의 도구화한다고 매도하면 부  
천서성고문사건을, 부천서성고문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사  
건을 보면서, 과연 그랬을까 의아  
해했다. 그렇지만 진실은 명백히  
그것이 아니었다. 이번 김기수씨  
유서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  
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전 문서분석실장의 유서감정결과  
가 채택되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없게 유서를 김정한 김  
씨는 뇌물감정사건으로 구속되어  
얼마 전까지 강기훈 동지가 있던  
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돈  
때문에 허위감정까지 한 사람의  
도덕성을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김기수씨 유서사건은  
제야세력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  
격을 입히며 지난해 5·6부쟁으로  
위기에 처한 현정권에 탈출구  
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안  
정이나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하  
여 조작해낸 사건들을 우리는 수  
없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 진실들은 세월이 지  
나면서 서서히 밝혀져 왔다. “진  
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이제라도 늦  
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진  
실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강기훈씨는 반드시 무죄석방되어  
야 할 것이다.

나호주(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6-1)



西紀 1992年 4月 21日 火曜日 41版 (30)

유서代筆  
항소심 판결 안내

## 国科搜 감정 신빙성 인정

유일증거 판정... 「뇌물」과 별개로  
在野·검찰 「도덕성」 대법원으로

○「유서대필」사건의 委基動피고  
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버스에  
서 내려 법정으로 항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제」를 강정  
하자 「국제」를 부정하는  
한 속설들이 사설성이  
으로 구속된다는 사실이  
로 간접적「국제」의  
자살이 서술된 사건  
로 간접적「국제」의  
방법으로 밝혀져야  
수사기관에 대한 저격임  
을 밝혔다.

인물 「국제」를 드러나는  
면자 「국제」를 드러나는  
해석부분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밝혀져야  
수사기관에 대한 저격임  
을 밝혔다.

〈本  
港〉

판정했다.  
재판부는 「국제」를 강정  
하자 「국제」를 부정하는  
한 속설들이 사설성이  
으로 구속된다는 사실이  
로 간접적「국제」의  
자살이 서술된 사건  
로 간접적「국제」의  
방법으로 밝혀져야  
수사기관에 대한 저격임  
을 밝혔다.

〈本  
港〉

# 강기훈씨 항소심도 3년선고

서울고법 “구속 국과수 김형영씨 감정결과 수용”  
유죄판결 항의 변호인단 퇴장

김기설씨 분신사건과 관련해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  
속기소된 전민관 충무부장 강기  
훈(2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서대필 혐의로 인정  
돼 징역 3년·자리잡자 1년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3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  
화 무장판사)는 20일 열린 강씨  
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씨에게 자살방조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직단체 가입 및 이직표  
현을 소지)를 적용해 강씨의 항  
소를 기각하고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진 김

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씨 등 중  
인들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  
소의 필적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씨가 유서를 대필한 것  
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민관 업무일자와  
수첩등도 모두 조작된 것이 분명  
하다”며 강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과수 문서분석  
실장 김형영씨가 뇌물수수 혐의  
로 구속돼 그의 감정에 의심이  
있을 수 있으나 유서 대필사건과  
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씨  
의 필적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가 강씨의 유죄를  
도оказ과 함께을 벌인 뒤 법정  
을 나갔다.  
강씨의 어머니 원태정(58)씨  
는 변호인단 3명은 항의의 표시  
로 피정했고, 방청객들은 재판부  
에 이유를 펴부으며 자리에서 일  
어나 거센 항의를 했다.  
장비는 충분한 모습으로 피고  
인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차례 고  
이 어려워지자 유죄이유를 마쳐  
말하지 않은 세 사람의 형량을  
설정하고 회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재판부 시작되  
기전부터 교도관·경찰·경리 등 50  
여명이 나와 법대와 방청석을 블  
으므로 차단했으며 전시도장·방청  
객들과 경찰 사이에 품새들이 몇  
마리기도 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  
다.







목회자들의 단식기도도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전 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가 자신의 절 백을 주장하여 육중단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회자 20여명이 공정재판을 요구하며 시한부 단식기도를 밟이고 있는 기독교 폐주년기념관을 찾은 강씨의 어머니 권태평(58)씨가 강씨의 말을 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7. 22. 월

**유서代筆사건**

서울高法 신빙성논란 國科搜감정 인정

7. 22. 월

**기독교 목회자들의 단식기도도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전 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가 자신의 절 백을 주장하여 육중단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회자 20여명이 공정재판을 요구하며 시한부 단식기도를 밟이고 있는 기독교 폐주년기념관을 찾은 강씨의 어머니 권태평(58)씨가 강씨의 말을 하고 있다.**

기독교 목회자들의 단식기도도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전 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가 자신의 절 백을 주장하여 육중단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회자 20여명이 공정재판을 요구하며 시한부 단식기도를 밟이고 있는 기독교 폐주년기념관을 찾은 강씨의 어머니 권태평(58)씨가 강씨의 말을 하고 있다.

(기독교 목회자들의 단식기도도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전 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가 자신의 절 백을 주장하여 육중단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회자 20여명이 공정재판을 요구하며 시한부 단식기도를 밟이고 있는 기독교 폐주년기념관을 찾은 강씨의 어머니 권태평(58)씨가 강씨의 말을 하고 있다.)

기독교 목회자들의 단식기도도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전 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가 자신의 절 백을 주장하여 육중단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회자 20여명이 공정재판을 요구하며 시한부 단식기도를 밟이고 있는 기독교 폐주년기념관을 찾은 강씨의 어머니 권태평(58)씨가 강씨의 말을 하고 있다.)

[2] 1992년 4월 22일(수요일) 한겨레

[4판]

## 사설

### 상식 짓밟은 강기훈씨의 유죄판결

#### 사법 불신 심화시키려는가?

언제나 시민의 '상식'이 패배하는 재판, 그 재판이 바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에 대한 재판이다. 지난해 12월 20일의 1심 판결에 이어, 지난 20일의 항소심 판결도 시민의 상식을 뒤엎기는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항소심 판결이 상식적인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고 말해야겠다. 왜냐하면 1심 판결 이후에 강기훈씨에 대한 유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근본부터 크게 훤헌렸음에도 판정 결과는 1심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강기훈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고 감정한 김형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 실장은, 김형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상식적인 사람들은 "김형영 실장의 감정을 믿기 어렵다" 또는 "강기훈씨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1심 때와는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법대화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판사는 상식인들의 이런 판단이나 전망을 깡그리 무시하였다. 재판부는 김형영씨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로 "김씨가 뇌물을 수수·함의로 구속돼 그의 감정에 의심이 있을 수 있으나 유서대필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자유심증은 법률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국민을 납득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시민의 '상식'이 재판부의 판결에 의문을 갖는 핵심은, 감정을 미끼로 뇌물을 받은 사람이 공권력이나 정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 과연 공정성을 지킬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이 될 것이다. 돈을 상습적으로 받으면서 양심과 도덕과 과학을 유린하는 부패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권력에 불리한 감정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형영씨의 뇌물사건과 유서대필 감정 결과가 별개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구도 납

득시키기 어려운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더구나 1심 재판부가 김형영씨를 '한글 필적 감정의 최고 권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강기훈씨에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상기할 때, 김씨가 파렴치법으로 드러난 이후에 내린 서울고법의 판결은 더욱 충격적이다.

김형영씨가 구속되고, 국과수의 '과학'과 권위가 여지없이 추락한 이후에 보인 재판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김씨가 구속되자마자 재판부는 마땅히 김씨의 감정 결과에 의문을 갖고 유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다시 시도했어야 했었다. 우리가 유감을 갖는 것은 변호인단이 일본에서 데려온 필적감정 권위자의 감정 결과가 무슨 이유로 재판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김정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뇌물수뢰자의 감정 결과는 존중되고, 그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또 다른 전문가의 감정 결과는 애써 무시되는 재판이 어떻게 공정하다 할 것인가. 더구나 최근에는 검찰이 자살한 김기설씨의 필체와 비슷한 김씨의 또 다른 흘림체 글씨를 수사과정에서 입수하고도 그것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 주장 역시 재판부에 의해 신중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강기훈씨는 1심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불충분한 증거에 의해 다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의심이 이 같 때는 피고인의 이의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정신은 형사재판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상식에 맞지 않는 재판부의 추론이나 논리구성이나 자유심증, 또는 형사소송법 정신이 존중되지 않은 판결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항소심 판결 때 변호인단이 퇴장하고 방청객이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나며, 재야의 지도급 인사들이 2심 재판부를 '율생이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상황은 시민의 '상식'이 유린당하는 데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 신문

1988.6.18제3종우편물(가)급인가

제1220호

1992년 4월 20일, 죄없는 청년 강기훈 형제에게 서울고등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이 날은 또 한번 사법부의 죽음을 알리는 조종이 울려진 날이다. 사법부가 죽은 것이 아니니 한 번뿐이겠는가마는 이제까지의 죽음을 늘 타설이었다. 그런데 이번 죽음은 헌재 차살이었다는 진한 느낌이 든다.

**강기훈 유죄선고 '자살'**

때문에 우리는 재판 결과에 대한 의문에 앞서 허탈과 좌절, 슬픔과 쓸쓸함을 맛보며 사법부에 대해 어떤 연민의 정을 갖게 된다. 차살자에 대해서는 물가를 부지 않는 것이 사람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예의로 생각되어 이 글을 쓰면서 오랫동안 방徨였다.

얼마 전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법부의 구조적 비리 보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놀랐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그것을 이제야 알았는가?"하면서 오

히려 판장을 주기도 했다. 강기훈 형제의 2심 재판을 지켜보면서 뻔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법관들의 인간적 양심과 양식에 한가닥 희망을 걸은 했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꿈이랄까 이상이랄까 아니, 늘 희망이란 유혹에 빠져온 했다. 희망만이 삶을 이끌고 미래를 일구는데 큰 힘이기에 말이다.

그러나 재판의 모습은 활으로 한실했고 웃기는 것이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경 우에 우리는 혼히 "그런 법이 어디 있어?"하고 항변한다. 2심 재판이 바로 그러했다. 상식과 양심의 절벽이 관 범인, 그런 법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말장난, 재번, 거짓, 형식논리 등으로 시간만 낭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애초부터 재판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재판의 결과를 놓고 무슨 말이 필요한가.

다만, 재판부의 임대화, 윤석중, 부구속, 등 세 법관의 이름과 모습이 1심 재판부의 법관들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니 그 신기한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을 두려워했고 진실과 양심 앞에서 그래도 머뭇거리며 몇몇지 못함을 간접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악한 인간,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했기에 우리는 그 판결 앞에서 오히려 원고쪽인 검찰을 더 나무랐던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경우는 1심 재판부의 판결자세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슬펐다. 도록 세계에서 초법은 어설플고 서툴러 썩스러워하며 노련한 고참이 되면 기술도 늘고 양심은 지나고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많은 자성인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구속하고 재판하면서 그들도 법의 한 체제 앞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피로워할 줄 알았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검찰과 법관들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는 좌각이었다. 그들은 조금도 피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유신독재 체제를 응호했다. 암흑, 바로 그것이 현실인 때였다.

그래도 그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밝혀준 훌륭한 법조인들이 있었다. 이른바 인권 변호사들이었다. 이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법조계의 현실을 반성하면서 해방되거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과 언론은 한바탕 되어 독재정권에 기생(寄生)한 기생(蟲生)이라고 고백했다. 회생을 무릅쓰는 이들의 현실적 변론과 용기있는 고백은 때문에 사회에 정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사라진 선·빛·정의**

1988년엔가 뜻있는 법관들이 사법부의 개혁과 정화를 위하여 앞장서서 무신하며 있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법조계의 귀감인 고 김홍섭 판사의 청빈한 삶과 고뇌의 모습이 또한 뇌리에 머물렀다. 어느 사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며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정의와 불의가 투쟁하고 있다. 문제는 선과 악이 솔직히 빛과 어둠이 되어 있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강기훈은 공권력의 무지막지한 거짓말을 저행하기 위한 회생양이 되어 아직도 어제구이 없는 시련 속에 있지만 홍성을 씨는 밤았어 떠어진다 하네. 자네가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으면서도 운동관에서 대학 출신생 행세를 한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 하네.

**공소장 복사한 판결문**

그런데 그때마다 명판결이 나왔다. 공소장인지 검찰의 구형장인지 그것과는 제목과 말하는 주체만 달랐을 뿐, 글자 하나를 끌리지 않고 똑같은 것이었다. 말하자면 공소장의 목사가 판결문이었다. 한심한 명판결문이었다.

이런 판결문을 놓고 그래도 같은 법조계 출신이라고 변호사들은 그것은 공소장에 대한 소·국적 저항이라고 폐평해주었다.

〈신부〉

**사법부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한 세웅

윤장, 현란한 법률용어를 총동원하여 공소장에 담아 고발했다. 그리고 날 이길 없이 말장난의 재판은 일정한 시간안내로 끝났다.

오늘 사법부는 죽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우리는 되살아나야 한다. 사법부도 우뚝 재자리에 서야 한다. 사법부의 개혁을 꾀했던 뜻있는 법관들을 통해 사법부가 되살아나야 한다. 시신에 미련을 갖지 말자. 우리에게는 늘 새롭고 생생한 회생이 있지 않은가.

법관의 판결이 무슨 상관이나. 강기훈 형제의 죄 없음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악한 인간, 우리들의

곧 이 판결은 법관의 뜻과 아무 상관없어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달라는 법관 특유의 풍자였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이해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검찰과 법관들을 대하면서 그들은 그래도 몇년간 법을 전공했으니까 민족과 정의 앞에 한가닥 양심은 지나고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많은 자성인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구속하고 재판하면서 그들도 법의 한 체제 앞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피로워할 줄 알았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검찰과 법관들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는 좌각이었다. 그들은 조금도 피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유신독재 체제를 응호했다. 암흑, 바로 그것이 현실인 때였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밝혀준 훌륭한 법조인들이 있었다. 이른바 인권 변호사들이었다. 이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법조계의 현실을 반성하면서 해방되거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과 언론은 한바

탕 되어 독재정권에 기생(寄生)한 기생(蟲生)이라고 고백했다. 회생을 무릅쓰는

이들의 현실적 변론과 용기있는 고백은 때문에 사회에 정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사라진 선·빛·정의**

1988년엔가 뜻있는 법관들이 사법부의 개혁과 정화를 위하여 앞장서서 무신하며 있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법조계의 귀감인 고 김홍섭 판사의 청빈한 삶과 고뇌의 모습이 또한 뇌리에 머물렀다. 어느 사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며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정의와 불의가 투쟁하고 있다. 문제는 선과 악이 솔직히 빛과 어둠이 되어 있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강기훈은 공권력의 무지막지한 거짓말을 저행하기 위한 회생양이 되어 아직도 어제구이 없는 시련 속에 있지만 홍성을 씨는 밤았어 떠어진다 하네. 자네가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으면서도 운동관에서 대학 출신생 행세를 한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 하네.

**벌써 김기설씨 1주기**

하지만 기설아, 나는 알 것 같네. 가난한 가정, 어려서부터 계모 눈치 살피며 한 소년이 소중히 키웠을 드립드보의 아망, 그러나 머리 좋은 것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는 이 잘못부성이인 세상에서 결국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부러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입지전적 꿈의 큰 아픔을. 대학생들을 바라보던 자네의 가슴을 지저렸을 아픔을. 그렇게 학력을 속인 대를 여성 사랑하는 가운데 자네가 겪어야 했던 비련의 아픔을..

검사와 판사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무식자'의 유서 편적이 그리 달필일 리가 없다고 한다네. 그러나 졸필이어야 할 '무식자'인 자네의 그 거칠 없는 달필이 바로 부러져버린 자네의 입지전적 꿈의 모든 아픔을 생생히 말해주고 있네. 그것은 정녕 '배신'이 아닌 '아픔'이었을 것인데, 홍성은씨

## 신문

1988.6.18제3종우편물(가)급인가

제1233호

지난 5월8일 고 김기설씨의 1주기를 맞아 서준식씨가 그의 묘소 앞에서 느낀 상념을 적어 본사에 보내왔다. 〈편집자〉

"기설아, 그동안 잘 있었니? 자네의 1주기를 알기라도 하는지 이를 동안 계속 내리던 비가 그쳤네. 무겁게 흐린 하늘 아래 이곳 묘지는 유난히 음울스런데. 무디어진다던데 혹시 그런 타성과 맥을 같이한다고 이해해줄 수 있는지 확답한 심정이다.

70년대 박정희 유신시대의 긴급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했다. 검찰은 죄도 아닌 죄를 열거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것을, 맹그러 현실인 때였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가 오기 전에 자네 무덤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

예상은 했었는데. 우리가 왔을 때 자네 무덤 앞에는 꽃 한송이 소주 한잔 없었고 조출한 묘비판 비단을 펴면서 호적이 서 있었는데. 755번 좌석버스는 오늘 아침도 경충기도를 달리고 있는데..

유서사건, 유서사건 하며 이 1년간을 나

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 자네의 무덤으로 오기 위하여 오랜만에 원진레이온 앞을 지나 경춘가도를 달려왔다. 1년 전, 나는 자네를 묻으려 이 길을 오다가 원진레이온에 잠깐 들러 자네를 위해 노제를 지냈었는데. 원진 직원들이 주를친 얼굴들.. 노제 지낼 때 이 모든 상념이 머리 속에서 빙글빙글 떨어졌다. 갑자기 눈물로 변한 한꺼번에 쏟아져 버렸었다네. 그 눈물 맞이 저림 때마다 무럭무럭 자라온 끝내는 가지 무성한 거목이 될 것이다. 그리고 훗날 따가운 끼야별 아래 따뜻한 흙먼지 길을-간다. 지친 사람들이 자네의 그 무성한 가지 그늘에 편안히 앉아 쉬며 옛 이야기를 할 걸세. "그 옛날 이성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암흑의 시대가 있었단다. 사람들은 '유서사건'이라는 희한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폭력정권 타도를 외치며 스스로를 불사른 젊은이를 유서도 뚫쓰는 무식쟁이로 모욕하고도 대연했던나.."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세상이 가도 결코 바뀌지 않는 눈빛으로 자네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우리, 백명도 안되는 수이

지만 오늘

여기 이렇게 모였구나.

자네 놀라

지 말게. 그중에는 멀리 속초에서 온 동우

전문대 아이들이 15명이나 있다네!

모두 자네를 보고 싶어 할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네. 강기훈은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자네가 사랑했던 홍성은씨..

자네에게 여자친구 하나 소재해준 죄밖에 없는 강기훈은 공권력의 무지막지한 거짓말을 저행하기 위한 회생양이 되어 아직도 어제구이 없는 시련 속에 있지만 홍성을 씨는 밤았어 떠어진다 하네. 자네가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으면서도 운동관에서 대학 출신생 행세를 한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 하네.

**당신이 뿌린씨 거목이 되는 날을...**

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 자네의 무덤으로 오기 위하여

오랜만에 원진레이온 앞을 지나 경춘가

도를 달려왔다. 1년 전, 나는 자네를 묻으려

고 있던 길을 오다가 원진레이온에 잠깐

들러 자네를 위해 노제를 지냈었는데. 원진

직원들이 주를친 얼굴들.. 노제 지낼 때

이 모든 상념이 머리 속에서 빙글빙글 떨어졌다.

갑자기 눈물로 변한 한꺼번에 쏟아져

버렸었다네. 그 눈물 맞이 저림 때마다

무럭무럭 자라온 끝내는 가지 무성한

거목이 될 것이다. 그리고 훗날 따가운

끼야별 아래 따뜻한 흙먼지 길을-간다.

지친 사람들이 자네의 그 무성한 가지 그늘에

편안히 앉아 쉬며 옛 이야기를 할 걸세.

"그 옛날 이성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암흑의 시대가 있었단다. 사람들은

'유서사건'이라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의 자네에겐 끌어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것이다. 어버이 날이네.

기설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



【17】 第14756號

〈第3種郵便物(2)種類可〉

92. 7. 2f 49-2

# 科搜研의 필적감정 신뢰성 인정

범죄수단 제공 아닌 도움도 방조로 운동권과 法廷공방서 공권력 승리

## 姜基勳씨 有罪확정의 언저리

부사장 윤금씨의 유서를 대필한 혼인으로 구하기 소된 전민련 출신 부장 윤기 러고 고인(28세)에게 대번원에서 유품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 3부(주심朴萬植대법관)는 24일 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 판결에서 제1항 수첩이나 법률자는 외형이 내수에 변조된 흔적 면밀하다며 판결서에 국의 구호와 함께 「婆基動은

무죄다. 라고 적힌 꽈戾장을 들고 가두 행진을 벌였다.  
한편 광교고인 유서대필 사건 광복대첩위원회는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불복, 前 괴립과 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金炯永씨를 위증죄로 고발함에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유엔여권위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 유서代筆「有罪확정」

본신자 송한 前金民陽사 대부장  
金基成씨의 우서를 대금민양사로  
구속기소된 羣齋副刊고이에게 대  
법정이 최종판으로 유죄를 확정함  
으로써 지급까지 1년 6개월 전 친소  
위 「우서 판결(原告判決)」이 모두 끝  
났다.

제작자: 김명숙  
제작일: 1998년 1월 1일  
제작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제작비용: 100만 원  
제작자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  
제작자 전화번호: 010-1234-5678  
제작자 이메일: kmn@hanmail.net

다. **유서**에 또 **공방**에 서 25  
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자  
한국 **유서**에 대한 1-200여명  
이 참석해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 행사를 계기로 **유서**는  
무자실을 도록 하면서 **공방**에서도  
무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표합  
방식으로서 유서 대회는 자살  
방지와 정신건강부를 통한 선진  
리행도 체증 마무리되었던  
다.

「ମୁହଁରା ନମାମିଶ୍ରମାନଙ୍କ ଟାକାର  
ଇହାଠ ଝମାନ ପାରି ସମ୍ମାନ ତାତ ଆମ  
ଏ ମୁହଁରା ନମାମିଶ୍ରମାନ ନାହାଯାଏ ଯାତ୍ରକାର  
ପାରି ରାଜମହାନାଳ ଅନ୍ଧାରାନ ଅନ୍ଧାରା  
ଦାନ ଅନ୍ଧାରାନ କାହାର ମନ୍ଦିରମାତ୍ରରେ ଯା  
ଏ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ନାହାନ ଯା  
ଏହାଠ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ନାହାନ ଯା

단 6 월 24일까지 선거 빼게 지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淩濛大公 층을  
한 왕 정국의 도덕성을 제기 '홀로  
죽을지'를 미지의 힘에 도구로 삶을  
구하는가 하는 쟈 아동통제법의  
도덕성을 제기 치하였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살피는 책입니다.

印市石燈院 어버스이씨  
과례 모란 햇강다.

◆ 그때 火焰水槍이로 번진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을 4  
월여 있은 1·2·3·4월에 걸쳐서  
도 판가를 놓지 않았다. 솔직히  
金西明의 유서와 麥可고인의  
필적은 이 일치한다고 간주한  
國科授 金炯水성장의 구속에  
도 評구, 評교하고 있어 유서를

ପାଦରେ କିମ୍ବା ପାଦରେ କିମ୍ବା ପାଦରେ କିମ୍ବା  
ପାଦରେ କିମ୍ବା ପାଦରେ କିମ୍ବା ପାଦରେ କିମ୍ବା

[View Details](#) | [Edit](#) | [Delete](#)

10

金明振(金明振) 서회부기자

박내린 '유서, 공보  
金明振〈人회부기자〉

三

現場直擊

# 大法 "유서대필 인정" 上告기각

# 姜基勳씨 有罪원심 확정

법률상 공권력 權威의 승리  
不信時代 진실로는 거리감

第13614號 93.2.4 總計 (第3種類)

